

# 조선시대 주요 의료 관련 쟁점과 관심사 - 시행법령을 중심으로

박훈평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외사학교실

## Major Medical Issues and Interests in the Joseon Dynasty - Focusing on Enforcement Laws

PARK Hun-pyeong

*Dept. of Medical Classics & Medical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Dong Shin University*

Through this paper, all the provisions of the enforcement statutes stipulated in the Joseon's law code were investigated and major medical issues and interests in the Joseon Dynasty were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period reviewed in the text are as follows.

The early Joseon Dynasty is divided into three periods. First of all, Joseon filled the gap in the law with the active acceptance of the Ming Dynasty's law code, Daemyeongrul, which conformed to Confucian virtue. Next, the completion of Gyeonggukdaejeon was an opportunity to prepare the basis for Joseon's medical laws. Lastly, from the late 15th century to the 16th century, the existing medicine promotion measures and emphasis on *hyangyak*(domestic herb) continued. It can be said that Joseon's politicians needed a medical policy based on Confucian virtues and maintained state-led promotion policies, but on the other hand, there was no other alternative to try newly by reflecting the limitations and failures of the policy.

The late Joseon Dynasty is also divided into three periods. First of all, the period from the late 16th century to the early 18th century was marked by the growth of families in technical positions. The era of King Yeongjo can be said to be the period of reorganization of medical related laws. Finally, the period after the late 18th century is a period of passive regulation and supplementation. Lastly, the revision of the actual medical law was not made or reflected in era of King Jeongjo.

In the case of the early Joseon Dynasty, the policy shifted from state-led to families in technical positions. However, in the 19th century, the weakening of the royal authority led to the weakening of the overall administrative system of the country, and the pharmaceutical policy had to be limited.

Key words : medical law, Daemyeongrul, Gyeonggukdaejeon, medicine promotion plan, Joseon legal history

### I. 서론

‘예주법종(禮主法從)’이라는 말로 대변되는 “법은 덕치(德治)의 보조 수단”이라는 관념은 조선시대 법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각이다.<sup>1)</sup> 이러한 시각에서는 법을 국왕이 유교적 왕도정치를 행함에 있어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여긴다. 그러나 조선은 왕정국가임에도 연산조 등의 특정 시기를

제외하면, 국왕과 신하의 관계는 상호 균형을 유지하였다. 예를 들어 조선의 행정은 국왕과 육조(六曹)의 체계가 핵심이었는데, 이 체계는 의정부(議政府), 사헌부(司憲府), 사간원(司諫院)의 견제를 받았다. 이는 객관적인 법의 존재에 의하여 구현되었다. 조선은 『경국대전(經國大典)』 이후로 고종 조에 이르기까지 통일 법전을 지속적으로 편찬하고 시행하여 법치주의 국가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물론 법치주의의 핵심은 “정치에 대한 법의 우위성이 필수”이다.<sup>2)</sup> 이런 점에서 왕정국가인 조선을 온전한 법치주의 국가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조선에서 행해진 정치의

접수 ▶ 2023년 04월 10일 수정 ▶ 2023년 04월 25일 채택 ▶ 2023년 04월 24일  
교신저자 ▶ 박훈평, 전남 나주시 동신대길 120-9 대정4관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외사학교실  
Tel : 061-330-3525 E-mail : lillipute@dsu.ac.kr

1) 박병호. 「한국에 있어서의 법과 윤리도덕」. 저스티스, 1992;25:81. 정공식. 『조선의 법치주의 탐구』. 파주:태학사, 2018:19.

2) 정공식. 위의 책. p. 19.

핵심이 덕치이든 법치이든 관계없이, 국가 행정의 실제 적용은 법조문에 근거하였다. 즉 “제도가 곧 법이며 역사적 현상은 법적 사실”<sup>3)</sup>인 것이다. 제도는 규정 없이 존재할 수 없고, 법조문에 의하여 구체화된다.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안은 법에 의하여 그 의미를 가지게 되고, 이후 규정으로 명문화되어 흔적을 남기게 된다.

『경국대전』 등의 법전은 이러한 관습법 성격의 개별법을 취합한 결과물이었다.<sup>4)</sup> 이렇게 만들어진 국가 법전은 일종의 성문법으로 작용하면서도, 사안에 따라 수교집의 형태로 계속적인 관습법의 보완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떠한 쟁점이 없거나 위정자(爲政者)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사안이라면 당연히 구체적인 법령 입안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조선이 완전한 법치 국가가 아니었으므로 일어나지 않은 사안들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법령을 정비할 이유는 없었다.

유교적 전통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명나라의 『대명률(大明律)』은 조선 건국 세력인 신진 사대부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수용되었으며, 이후 조선의 개별법이 만들어지는 데 일종의 지침 역할을 하였다. 조선 전기의 법제사는 『대명률』을 준용하면서 조선의 여건에 맞게 수정하고 보완하는 작업의 연속이었다. 그렇다면 어떠한 규정이 중국의 규정을 준용하였는지, 축소되거나 확대되었는지 살핌으로써 조선시대 위정자들에게 주요했던 문제들이나 관심사를 확인할 수 있다.

본고에서 조선시대 법전에 규정된 시행 법령 규정을 모두 조사하여 조선시대 주요 의료 분야 쟁점과 관심사를 일별하고자 한다. 최근에도 『법전』 규정을 활용한 의학사 연구는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실록』과 법전 규정을 분석하여 조선 초기 의료 진흥 정책의 전개가 통유론(通儒論)과 직분론(職分論)의 대립과 절충임을 보여주거나,<sup>5)</sup> 『법전』을 활용하여 조선 후기 중앙군영 의관 직임이나 내의원 의관의 직임을 연구하였다.<sup>6)</sup> 그런데 이들 연구는 대개 제도사에 치중되어 있어, 조선 의료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조선의 시행법령 규정 분석을 통하여 의료 규정의 변천

사를 살핀다면, 조선시대만의 특성이 더 명백하게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제도사 외의 조선시대 의료 분야 쟁점과 관심사를 살펴서, 그동안 미진하였던 주제를 발굴하고 분야를 확장하여 새로운 연구를 추동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의료 제도사 내용은 선행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졌으므로 본고에서 언급은 하지만, 본고의 목적상 주요하게 다룰 필요는 없을 것이다. 또한 특정시기에 명문화된 법전 규정을 다룬다는 점에서, 여러 규정들 사이에서도 시간적인 선후가 존재할 것이나 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그 규정이 생기게 된 계기 및 결과까지 영역을 확장하는 작업은 의료 제도 전반을 이해함에 필수적일 것이나, 이 또한 개별 주제별로 별개의 연구 주제로 발전시킬 것으로 본고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았다. 본고는 조선시대 주요 의료 분야 쟁점과 관심사를 일별하고자 하는 의도임을 다시 밝히는 바이다.

## II. 본론

### 1. 조선 전기의 의료 관련 쟁점과 관심사<sup>7)</sup>

#### 1) 중국 법률의 도입 - 『대명률』의 준용(準用)과 보완

1392년 조선의 개국 당시에 조선에는 조선만의 독자적 법전이 없었다. 그래서 당시 가장 최신(1389년)의 중국 법전이자 유교 사상에 근간을 둔 명나라의 법전인 『대명률』을 조선의 법전으로 삼았다. 그러나 실무자들이 그 내용을 그대로 이해하기 어려웠으므로 번역과 해석 작업이 뒤따랐다. 1395년(태조 4)의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가 그러한 성격의 최초 결과물이다. 『대명률강해(大明律講解)』(세종 연간 간행)도 이러한 작업의 연장선에 있다(그림 1). 이 두 법전은 『대명률』과 비교하자면 약간의 의약 관련 규정의 변화는 없고 주로 부연 설명만 추가되었다.<sup>8)</sup>

3) 박병호. 『근세의 법과 법 사상』. 서울:진원. 1996:429-430.

4) 조선시대 개별법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먼저 육조 등의 담당 관청이 국왕에게 관문(關文)을 올려 재가를 받아 시행하는 방식이 있었다. 다음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국왕의 판단에 의하여 수교(手敎)라는 형식의 법령이 만들어지는 방식이었다. 정궁식. 앞의 책. p. 39.

5) 이경록. 「조선 초기 의료진흥정책의 전개」. 연세의사학. 2020;23(1):7-36.

6) 박훈평. 「조선 후기 중앙군영의 군진의학 제도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22;35(1):1-11. 박훈평. 「조선 후기 내의원 의관의 직임과 인사」. 한국의사학회지. 2022;35(1):45-57.

7) 본고에서는 임진왜란의 전후로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를 구분하였다.

8) 의약관련 규정 외에서 『대명률직해』와 『대명률강해』는 조문 내용상에 사소한 차이가 있다. 이는 조선에 수입된 『대명률』 판본의 차이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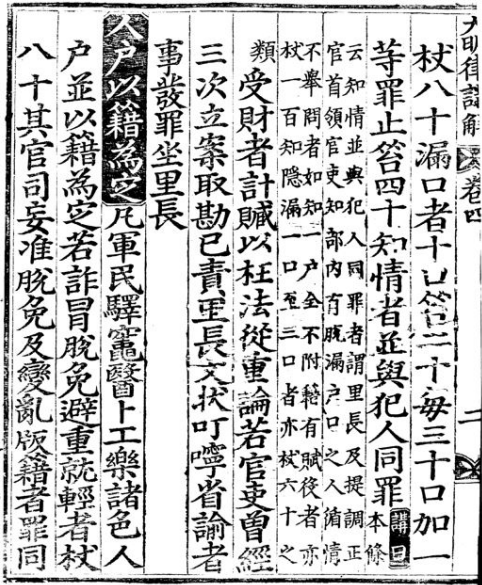


그림 1. 『대명률강해』의 호적(戶籍) 규정(국립중앙도서관 소장)

1585년 중국에서 간행된 『대명률부례(大明律附例)』(조선 간행 시기 미상)도 조선에 바로 소개되었다. 그런데 『대명률』 자체의 증보 작업은 조선시대 내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명율(明律)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수교들이 조선의 법[我國法]으로 인식되어 대명률의 증보가 아닌 국가 법전 내 형전(刑典)의 증보에 활용되었기 때문이다.<sup>9)</sup>

『대명률직해』의 의약 관련 조문은 총 7개이다(부록 1). 형전에 속하는 조문이 4개로 가장 많고 이전(吏典), 예전(禮典), 공전(工典)에 속하는 조문은 없다.<sup>10)</sup> 고려말 형사 사범의 혼란은 조선 건국 직후 위정자에게 있어 형사법의 정비를 당면 과제로 삼게 하였다.<sup>11)</sup> 이 과정 중에 『대명률』의 형율이 적극적으로 수용되면서 의약 관련 형율도 조선에 소개되었다.

고려시대 율령은 『고려사(高麗史)』 등을 통하여 일부 복원된 정도라 그 전모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상당 부분 동아시아 정치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던 중국 왕조의 율령을 채

용했을 것이다.<sup>12)</sup> 이를 감안하여 이 의약 관련 규정에 대한 조선에서의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아래의 호전(戶典) ‘호적(戶籍)’ 관련 조문은<sup>13)</sup>의 업 세습과 관련된다.

“의약(醫藥) ... 등 각종 인호(人戶)는 모두 호적으로 실체를 정한다. 농간을 부려 역을 면하려고 무거운 역을 피해 가벼운 역을 지려 한 자는 장형 80대에 처한다.” 『대명률직해 권4 호율(戶律) 호역(戶役)』

이른바 의호(醫戶) 제도는 『대명률』에서 처음 만들어지지 않았고 원나라 율령에서 처음 만들어졌다. 의호 제도는 원나라가 의료인력 관리에 있어서 이전의 왕조와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제도로서 세습 의사에 대하여 신분 보장을 하였다.<sup>14)</sup> 원말의 법전인 『지정조격(至正條格)』의 사례처럼 우리나라에서 원나라의 율령을 도입한 것은 분명하다.<sup>15)</sup> 고려는 당의 율령을 고려의 실정에 맞추어 채택하여 사용하였다. 고려는 고려의 상황에 맞게 중국법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변용시켰다.<sup>16)</sup> 조선에서 세습 의사에 대한 신분 보장이 법전에서 확인되는 것은 『대명률』 관련 법전들뿐이다. 물론 『대명률』이 형전 중심으로 조선에 수용되었기에, 호전의 이 규정이 조선에서 실천되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조선에서 세습 의사에 대한 보장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졌을까. 먼저 외방의생(外方醫生) 제도 운영에서 세습 경향이 나타난다. 의생 제도 자체는 우리나라에서는 신라 효소왕(孝昭王) 때부터 있었다.<sup>17)</sup> 그러나 당시의 의생은 의학을 배우는 의학생 정도의 의미로서, 조선조에 통용되는 의미와는 차이가 있다. 조선 초기에는 외방의생의 신분은 양반 자체로 하였으나,<sup>18)</sup> 점차 향리(鄉吏) 계층 출신이 주요한 구성원이 되면서 ‘의생의 향리화’가 이루어졌다.<sup>19)</sup> 조

조지만, 앞의 책, p. 56.

9) 김백철. 『당평시대 법치주의 유산』, 파주:경인문화사, 2016:95-96.  
10) 조문과 규정의 분류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운영하는 조선시대 법령자료 DB를 따랐다. 책에 따라 같은 내용이어도 속하는 분류가 다를 수 있으나, 여기서 내용 구분은 재분류하고, 다만 인용에서만 원래 분류를 기록하였다.  
11) 정공식, 앞의 책, p. 74-75.  
12)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고려시대 율령의 복원과 정리』, 서울:경인문화사, 2009:36, 692-696.  
13) 박훈평, 이정현, 남성우, 변일구, 구자훈. 『조선의 의료 제도』, 대전:한국한의학연구원, 2022:102. ‘...’는 내용을 줄일 때 사용하였다.  
14) 김대기. 『중국 원대 의료관원의 선발과 관리』, 의사학, 2017:26(3):455-502.  
15) 『지정조격』은 원나라 최후의 법전으로 고려 공양왕 때 정몽주에 의한 신율(新律) 제정에 주요한 지침으로 작용했다. 고려의 멸망으로 신율이 활용되진 못했으나 『경국대전』의 형전 등에 일부 내용이 반영되었고, 세종 조 문신을 대상으로 주요한 강습서로도 활용되었다. 조원. 『여말선초 원제국 법전 지정조격 활용과 그 의미』, 포은학연구, 2022:29(1):91-120.  
16) 김백철. 『법치국가 조선의 탄생』, 2판, 서울:이학사, 2017:146-147.  
17) 박훈평. 『조선시대 지방 의생 제도에 대한 고찰』, 한국사학회지, 2016:29(1):1.

선 초기 향리의 지위와 신분은 현실과 법적 지위 둘 다에서 양인에 비하여 차별 대우를 받았다.<sup>20)</sup> 조선에서 외방의 생은 단순히 의업에 종사하는 인력이 아니라 약재 진상 등의 공적인 의무를 감당하였다. 외방의생 당사자에게 있어 의업 세습의 보장은 신분 보장이라는 측면보다는 부담되는 향역(鄕役)이라는 면이 더 컸을 것이다. 의생은 지방 외에도 전의감(典醫監), 혜민서(惠民署), 제생원(濟生院)의 중앙 의료관청에도 정원이 있었다. 이러한 중앙관청의 의생에 대한 세습적 지위 신분 보장은 법전에서 찾을 수 없다. 다만 관청의 내규 등으로 이러한 보장이 이루어졌는데, 전의감과 혜민서의 생도(生徒)가 되는 완천(完薦)에서 전현직 의관 친족이 없다면 천거 대상조차 되지 못하였다.<sup>21)</sup> 중앙 의생은 별도의 역에 대한 부담이 없으므로 세습 의사의 신분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대명률』의 ‘의호(醫戶)’ 규정과 맥락이 같다.

병전(兵典) ‘구휼(救恤)’·‘잡령(雜令)’과 형전(刑典) ‘용율(用律)’·‘홀수(恤囚)’·‘살옥(殺獄)’ 관련 규정<sup>22)</sup>은 중국 당나라 고종 때(653년)에 반포된 『당률소의(唐律疏議)』의 수록 내용이 후대까지 계승된 것이다.<sup>23)</sup> 이러한 규정은 동아시아권에서 전부터 있었던 흐름이지만, 조선 개국 세력이 내세우는 유교적 덕치에도 부합하는 면이 있다.

아래의 ‘구휼’ 관련 규정은<sup>24)</sup> 여러 군영에서 군인을 돌보는 약방(藥房)과 침의(鍼醫), 전투 때에 같이 출전하는 군병구료관(軍兵救療官), 왕실 무덤을 만들 때 동원되는 인력을 돌보는 산릉도감구료관(山陵都監救療官) 등의 형태로 의료관청의 내규로 규정되었다.<sup>25)</sup>

“군사가 방어소에 있거나 정부나 각종 장인 등이 요역을 서는 곳에 있다가 질병이 들었는데, 담당 관사에서 의원과 약을 요청하여 질병을 치료하지 않으면 태형 40대에 처한다. 이에 따라 죽으면 장형 80대에 처한다. ...” 『대명률직해 권26 형율 잡범(雜犯)』

아래의 병전(兵典) ‘잡령(雜令)’ 관련 규정<sup>26)</sup> 병전 ‘구휼(救恤)’의 내용 일부를 보완하는 것이다.

“유능한 의원이 관청의 약재를 수령하여 군사에게 가게 되었다가 직접 가지 않고 무능한 의원에게 재물을 주어 대신 가게 하면 각각 장형 80대에 처한다. 대신 간 사람이 받은 재물은 관청에 몰수한다.” 『대명률직해 권14 병율 군정(軍政)』

아래의 형전(刑典) ‘용율(用律)’의 대불경(大不敬) 규정은<sup>27)</sup> 단종(端宗) 때 어의(御醫) 전순의(全循義)의 죄를 논함에 그대로 인용되었다.<sup>28)</sup> 이는 『대명률』의 조문이 조선에서 실제 법령으로 활용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여섯째, 대불경(大不敬)이다. ... 대불경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 황제에게 올리는 약을 책에 실린 처방에 따르지 않고 조제하거나 약 봉투에 이름을 잘못 쓴 경우 ...” 『대명률직해 권1 명예율(名例律)』

18) 『태조실록』, 태조 2년(1393) 1월 29일(을해). “계수관(界首官)의 의원(醫院)에 둔 생도는 양반의 자제를 뽑아, 그 중 교도(教導)를 정하여 백성을 치료하는 경험방을 익히도록 한다.”

19) 박훈평. 앞의 논문. p. 6.

20) 최이돈. 「조선 초기 향리의 지위와 신분」. 2010;110:55-94.

21) 박훈평. 「19세기 후반 전의감 의학생도에 대한 고찰」. 한국의사학회지. 2013;26(1):4-5.

22) 본고에서 ‘규정’은 ‘의료 관련 규정’을 일반적으로 지칭한다. 각 규정의 상세 내용은 부록 1 참조.

23) 박훈평, 이정현, 남성우, 변일구, 구자훈. 『조선의 의료 제도』. 대전:한국한의학연구원. 2022;312, 335-336, 342-343, 402. 김택민, 하원수 주 편. 『천성명 역주』. 서울:혜안. 2013:479.

24) 박훈평, 이정현, 남성우, 변일구, 구자훈. 위의 책. p. 311-312.

25) 『대명률직해 권26 형율 잡범』 “凡軍士在防禦所爲疾 丁夫及雜匠人等在立役所爲有如此 有疾病爲去等 次知官司亦 醫藥乙 傳請救病不冬爲在乙良 筭四十齊 因此致死爲在乙良 杖八十齊 ...” 고사경, 김지(1395). “大明律直解” 조선시대 법령자료(2023.4.25.). 번역은 박훈평, 이정현, 남성우, 변일구, 구자훈. 위의 책. p. 565-568.

26) 『대명률직해 권14 병율 군정』 “大醫亦 官藥乙 逢受 軍士良中 進使內如可 親進不冬 無用醫員乙 財物許給 代送令是在乙良 各杖八十 代立人矣 捧上爲乎 財物乙良 沒官爲乎事.” 번역은 박훈평, 이정현, 남성우, 변일구, 구자훈. 앞의 책. p. 322.

27) 『대명률직해 권1 명예율』 “六曰大不敬. ... 大廟及陵廟良中 神御之物果 進上車輿服用物等乙 偷取爲疾 御印乙 偷取及偽造爲疾 進上藥乙 不依本方 誤錯合造爲齊 藥封名乙 錯書爲齊 進上飲殮乙 ...” 번역은 박훈평, 이정현, 남성우, 변일구, 구자훈. 앞의 책. p. 327-328.

28) 『단종실록』 단종 2년(1454) 3월 16일(정묘). “又按 《大明律》大不敬之目云: “合和御藥, 誤不依本方若造御膳, 誤犯食禁之類。” 但云誤不依本方, 誤犯食禁, 而不言其情之有無, 事之切害, 蓋曰至尊之所, 少不盡心, 雖不至於有害, 勿論情之輕重, 必以此律而無赦也. 夫明恕謹嚴, 用法之至詳者, 莫如 《春秋》; 斟酌百王, 以爲萬世之所取象者, 莫如 《大明律》, 而不管藥, 不以爲適然, 而必加之弑君之誅; 誤不依方, 誤犯食禁, 不以爲過誤, 而必加之大不敬之罪: 皆所以維持上下, 除惡謹微之至意也.”

아래의 ‘홀수(恤囚)’ 관련 규정은<sup>29)</sup> 형조의 죄수를 돌보는 형조월령의(刑曹月令醫), 의금부의 죄수를 돌보는 의금부월령의(義禁府月令醫), 국경을 넘은 죄인을 돌보는 범월죄인구료관(犯越罪人救療官), 국문하는 죄수를 돌보는 추국구료관(推鞠救療官)의 형태로 의료관청에서 내규로 규정되었다.<sup>30)</sup>

“죄수에게 옷·양식·의약을 지급하는 것이 이치에 합당하다. ... 이것 때문에 죄수가 죽은 경우, 죄수가 사형되면 장형 60대에 처하고, 유죄이면 장형 80대에 처하고, ...” 『대명률직해 권28 형을 단옥(斷獄)』

그런데 이러한 규정이 당나라 율령부터 존재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다. 고려시대에 죄수를 돌보는 의원을 상설로 두자는 의견은 1392년(공양왕 3) 3월에야 제기되므로,<sup>31)</sup> 죄수를 돌보는 의원 제도는 고려와 다른 조선만의 독특한 제도이다. 이는 조선을 개국한 신정치 세력이 표방한 유교적 덕치에 부합하는 규정이라 조선에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다만 군인을 치료하는 군영의 의사는 고려시대에도 존재하였다.<sup>32)</sup>

이상 『대명률』이 조선의 의료 규정에 미친 영향을 보자면, 첫째 의업 세습의 보장, 둘째 기존 법령에 미비했던 형율(刑律)의 보완, 셋째 유교적 덕치에 부합한 규정들의 준용이다.

## 2) 조선 의료 법률의 근간 마련 - 『경국대전』 체제의 성립

1485년(성종 16)에 간행된 『경국대전』 체제의 성립은 중국이 아닌 조선에 알맞은 자체 법전을 가지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의료 관서와 직임은 이 시기에 만들어진 규정이 약간의 변화만 이루어지며 19세기까지 계

속 이어지게 된다. 『대명률』은 『경국대전』이 반포된 후에도 주요 법전으로 활용되었는데 조선 전기의 법체계는 『경국대전』을 중심축으로 하면서도 형율은 『대명률』로 대표되는 중국 법전으로 보완하는 형식이었다. 『경국대전』의 의약 관련 조문은 총 25개에 달하는데(부록 2), 예전(禮典) 조문이 14개, 이전(吏典) 조문이 6개 조이다. 기타로 병전(兵典)과 형전(刑典) 조문이 2개씩, 호전(戶典) 조문이 1개이다. 이렇게 형율이 『대명률』로 보완되었다는 점은 『경국대전』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전(吏典) 관련 규정을 비롯하여 12개의 조문은 의료관청 직제와 임명 방식 등의 내용이다. 병전(兵典) 관련 조문도 내용상 의서습독관(醫書習讀官)과 서반직(西班職) 의원에 관한 내용 등으로 이전(吏典)에서 거론된 내용과 통한다. 이들 규정은 다소의 가감이 있지만 『경국대전』 이후 큰 틀의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그렇다면 고려말과 비교하면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 먼저 의학에 대한 위정자의 관심이 증가하였다. 그 결과 의료 제도가 체계화되고, 의학에 종사하는 이들에 대한 대우가 좋아졌다.

이를 알 수 있는 사례로 먼저 의학에 종사하는 의료 관원의 관질(官秩)이 상향되었다.<sup>33)</sup> 고려시대 태의감(太醫監)의 의관 최고위직인 태의감판사(太醫監判事)는 종3품직이었고, 상약국(尙藥局)의 최고위직인 봉어(奉御)는 정6품직이었다.<sup>34)</sup> 조선에서는 내의원과 전의감의 의관 최고위직인 ‘정(正)’이 정3품직이다.

또한 교육 관련된 여러 규정이 신설되었다. 의생 제도를 비롯하여 여러 의학 권장 정책이 신설 내지 추가되었다. 고려조에도 12목(牧)에는 의학박사(醫學博士)를 파견하여 의학을 가르치게 하였고, 서경(西京)에는 의생 5명을 두는 등의 제도가 있었으나,<sup>35)</sup> 조선시대에는 목(牧)과 대도호부(大都護府)뿐만 아니라 모든 군현에 의생을 두는 식으로 바뀌었다.<sup>36)</sup>

물론 이러한 변화는 중앙정부의 힘이 지방 군현에까지

29) 『대명률직해 권28 형을 단옥』 “凡獄囚亦中 衣糧醫藥乙 理合請給爲在乙 ... 因此致死爲在乙良 囚人亦 當死罪去等 杖六十 流罪去等 杖八十 ...” 박훈평, 이정현, 남성우, 변일구, 구자훈. 앞의 책. p. 333.

30) 『해국지 연혁』 외임(外任) 조. 강위빙(1874), “惠局志” 규장각 원문 검색 서비스(2023.4.25.). 번역문은 박훈평, 이정현, 남성우, 변일구, 구자훈. 위의 책. p. 348.

31) 손홍열. 『한국중세의 의료제도연구』. 서울:수서원. 1988:104-105. 그해 7월 조선이 개국하므로 고려에서는 시행되지 못하였다.

32) 손홍열. 앞의 책. p. 103-104.

33) 『경국대전 이전』 경관직 조. “[내의원]... 정3품 정(正) 1원 ... [전의감]... 정3품 정(正) 1원 ...” 최항, 노사신, 서거정(1484). “經國大典” 조선시대 법령자료(2023.4.25.). 박훈평, 이정현, 남성우, 변일구, 구자훈. 위의 책. p. 45, 46.

34)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앞의 책. p. 692, 693. 태의감판사는 공민왕때 전의시정(典儀寺正)을 개칭하였고, 상약국은 봉의서(奉醫署)로 개칭되었다.

35)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위의 책. p. 335, 423.

미칠 수 있는 중앙 집권 국가로의 체제 변환 상황과 관련이 있다. 서경과 동경(東京) 등 주요 치소뿐 아니라 고려 문종(文宗) 때부터는 대도호부와 대도독부(大都督府)에도 의학 관료가 있어 치료를 담당하였는데,<sup>37)</sup> 조선의 외방의 생처럼 그 수가 많지 않아 그 역할은 제한적이었다.

의약 관련 예전(禮典) 관련 규정의 주요 내용은 장권(獎勸)과 혜휼(惠恤)이다. ‘혜휼’ 규정은 7개에 달하는데<sup>38)</sup> 유교적 왕도정치 내지 덕치(德治)를 표방한 조선 위정자로서는 당연하게 강조할 부분이었다. 『대명률』의 ‘구휼’과 ‘휼수’ 규정도 이와 맥락이 같다. 이러한 규정은 의료적 구휼의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시사한다. 『경국대전 호전』의 ‘비황(備荒)’ 규정 등을 보면 의료적 문제뿐 아니라 기아(饑饉) 등의 문제에서도 지방 수령이 일차 책임을 지고 있었다.<sup>39)</sup> 조선에서 의료적 문제가 공적인 책임 영역임을 분명히 한 것은 이러한 인식의 연장선이었다. 유교적 덕치가 백성들에 대한 치료까지 포괄함으로써 그 본말 및 크고 세밀함이 드러난다고 본 것이다.<sup>40)</sup>

『경국대전』의 완성은 조선의 의료 법령의 기초를 마련하는 계기였다. 『경국대전』은 유교적 덕치에 부합하는 의료 법령을 강조했으며, 의학 교육을 중시하였다.

### 3) 『경국대전』의 보완 - 수교집 및 『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

‘수교(受敎)’란 법전에 규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고위 신료들이 논의를 거쳐 정리하고, 그 결과를 왕명으로 내릴 때 왕명을 지칭하는 용어이다.<sup>41)</sup> 개별 수교들은 수교집

의 형태로 간행되었고 조선 전기에는 『대전속록(大典續錄)』(1492년),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1543년),<sup>42)</sup> 『각사수교(各司受敎)』(1546-1576년) 등의 수교집이 간행되었다. 여러 수교집에 수록된 의약 관련 조문은 『대전속록』은 19개, 『대전후속록』은 12개, 『각사수교』는 2개 조문이다(부록 3).

『대전속록』에는 기존 법전에서는 볼 수 없었던 호전(戶典) 관련 규정들이 보이는 것이 특색이다.<sup>43)</sup> 예전(禮典) ‘장권(獎勸)’ 관련 조문이 5개로 단일 항목으로는 가장 많다. 이는 의학 교육에 대한 위정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한다. 의서습독관 관련 내용으로 볼 때,<sup>44)</sup> 이 시기에도 유학 소양을 갖춘 의원을 양성하려는 정책이 지속되었다.

기존 법전에 언급되지 않던 외방의생 및 약부(藥夫) 관련 내용이 추가되었다.<sup>45)</sup>

향약 채취에 종사하는 약부는 천역(賤役)임에도 본업을 대대로 계승하게 하였는데, 직업의 계승이 양인 이하까지 확대될 만큼 의약의 전문성이 강화된 사례이다.

또한 약부의 역할을 향약(鄉藥)을 채취하는 이라는 점에서 국산 약재에 대한 정부의 의지도 읽힌다. 예전(禮典) ‘잡령(雜令)’ 규정 중에서 마황(麻黃)과 감초(甘草)에 대한 아래의 내용은<sup>46)</sup> 많이 쓰이는 약재의 국산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다.

“각 도에서 심은 감초·마황의 재배 현황을 1년에 1번 내의원 관원에게 전향별감을 겸직하게 하여 적간(擲奸)한다. ...” 『대전속록 예전』 잡령 조

36) 『경국대전 예전』 생도 조. 최항, 노사신, 서거정(1484). “經國大典” 조선시대 법령자료(2023.4.25.). 박훈평, 이정현, 남성우, 변일구, 구자훈. 앞의 책. p. 196.

37) 손홍열. 앞의 책. p. 113-114.

38) 예를 들어 『경국대전 예전』 혜휼 조 “환자가 한성의 오부(五部)에 요청하면 즉시 월령의(月令醫)를 보내어 치료하고, 가난하여 약재를 살 수 없는 사람에게는 관청에서 약재를 주고 예조에 보고한다. ...” 최항, 노사신, 서거정(1484). “經國大典” 조선시대 법령자료(2023.4.25.), 박훈평, 이정현, 남성우, 변일구, 구자훈. 위의 책. p. 257.

39) 박광준. 『조선왕조의 빈곤정책』. 서울:문사철. 2018:343-344.

40) 이경록. 『조선 초기 성리학적 의료관과 의료의 위상』. 의료역사연구. 2018:1(1):30.

41) 박훈평, 이정현, 남성우, 변일구, 구자훈. 위의 책. p. 25.

42) 『대전후속록』은 연산군의 폭정 이후 혼란에 빠진 법령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나온 법령집으로, 간행 후에 여러 조문이 삭제되고 서로 모순되는 내용들이 있어 결국 법령집의 역할을 상실하였다. 조지만. 『조선시대의 형사법』. 서울:경인문화사. 2007:200-201.

43) 예를 들어 『대전속록 호전』 징채(徵債) 조 “물품이 부족하거나 망실된 경우. ... 내의원·관상감·전의감 ... 혜민서 ... 활인서 ... 등의 각 관청은 자질구레한 물품을 제외하고 한성부에서 징수하여 물품을 준다.” 박훈평, 이정현, 남성우, 변일구, 구자훈. 위의 책. p. 132.

44) 『대전속록 예전』 권장(獎勸) 조. “내의원 습독관의 증시강독(曾時講讀)은 내의원 제조가 매달 3회 고강하고, 점수에 따라 전체를 따진 후 녹을 주는 체아직으로 올리거나 내려 제수한다. 본업에 정통한 이는 주상에게 아뢰어 현직(顯職)을 제수한다.” 이극중(1492), “大典續錄” 조선시대 법령자료(2023.4.25.), 박훈평, 이정현, 남성우, 변일구, 구자훈. 위의 책. p. 234.

45) 『대전속록 예전』 장권(獎勸) 조. “외방의생의 교육은 교수나 훈도가 겸직하여 주관한다. 관찰사의 고강 결과, 의서에 정통했다면 그 집을 完護해주고, 미련하여 이해하지 못한 자는 充軍한다. ...”, “藥夫 父子는 다른 역에 배정하지 말고, 본업을 대대로 잇게 한다.” 이극중(1492), “大典續錄” 조선시대 법령자료(2023.4.25.). 박훈평, 이정현, 남성우, 변일구, 구자훈. 위의 책. p. 235.

46) 『대전속록 예전』 잡령 조. 이극중(1492). “大典續錄” 조선시대 법령자료(2023.4.25.). 박훈평, 이정현, 남성우, 변일구, 구자훈. 위의 책. p. 273-374.

아래의 형전(刑典) ‘공천(公賤)’ 관련 규정은<sup>47)</sup> 기존 관서나 의관에 배속된 노비의 수를 늘리거나, 새롭게 규정하는 것으로서 의약 관서의 위상 강화를 의미한다.

“추가로 정한 선상노(選上奴). ... 내의원 당상관은 근수노 각각 2명. ... 의서습독관·강이습독관은 근수노 각각 1명. 【당시 관원 수에 따른다.】 ... 육조의 약방은 차비노 2명, 근수노 3명. 【7품 이하의 관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 『대전속록 형전』 공천(公賤) 조

아래의 병전(兵典) ‘복호(復戶)’ 관련 규정은<sup>48)</sup> 기존의 급보(給保)를 받던 의관과 의생뿐 아니라 의녀까지 부역 면제를 규정하여 의업에만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의의가 있다.

“[복호] 전의감·사역원·관상감·혜민서·율학·산학 관원과 생도 ... 의녀 ... 들은 모두 복호(復戶)한다.” 『대전후속록 병전』 복호(復戶) 조

아래의 형전(刑典) ‘금제(禁制)’ 관련 규정은<sup>49)</sup> 사적인 약물 무역에 대한 금지는 약재를 국가 주도로 관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이는 약재의 국산화 노력과 함께 의약이 국가의 관리 대상임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sup>50)</sup>

“외국인의 처소에서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는 물건·포목·약재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잠매금물(潛賣禁物)>조에 의거하여 죄를 논한다. ...” 『대전후속록 형전』 금제(禁制) 조

1555년(명종 10) 간행된 『경국대전주해』는 『경국대전』의 어려운 조문에 대한 해설서이다. 이 책의 의약 관련 조

문은 7개이다(부록 4). 이전 관련된 내용이 많은데, 의서습독관을 본업인(本業人)으로 대우하는 내용, 포핍(褒貶)에서 평가가 낮은 의관의 서용(敍用) 건 등이 새롭게 제기되었다.<sup>51)</sup> 전자는 의서습독관에 대한 권장책의 일환이었으며, 후자는 의관의 업무에 대한 권장으로서, 우수한 의료인력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었다.

이상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에 만들어진 수교집 및 『경국대전주해』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먼저 기존의 의약 진흥책이 지속되었다. 그런데 기존 진흥책이 정말 효과적이었다면 연달아 진흥책을 시도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sup>52)</sup> 조선의 위정자에게 있어 유교적 덕치에 입각한 의료 정책이 필요하여 국가 주도의 진흥책을 유지하는 하였지만, 그 정책의 한계와 실패를 반영하여 새롭게 시도할 다른 대안은 없었다고 평할 수 있다. 둘째 향약을 정책적으로 중시하였다. 약을 캐는 약부(藥夫)를 세습하는 역으로 두는 것이나, 외국 약재의 사사로운 무역을 금지하고, 마황과 감초 재배에 대한 진흥책도 이러한 사례이다. 향약 중시 정책도 『향약집성방』의 간행 등으로 대변되는 기존 정책의 유지였다.

## 2. 조선 후기의 의료 관련 쟁점과 관심사

### 1) 기술직 중인 가문의 성장 - 『수교집록(受教輯錄)』 및 『전록통고(典錄通考)』

16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초반에 만들어진 법령서는 『수교집록』과 『전록통고』가 있다. 『수교집록』은 1698년(숙종 24)에 간행된 수교집이, 『전록통고』는 1707년(숙종 35)에 간행된 법령집이다. 『전록통고』는 『경국대전』 이후의 법령 변화를 반영하여 일목요연하게 살필 수 있게 기획된 책으로 국가 법전의 성격은 아니지만 기존 수교들에 대한 통일화된 법령집이다. 『전록통고』는 기존 수교들을 대개 단순하게 모은 책으로 별다른 내용이 없으므로, 여기서는 16세기

47) 『대전속록 형전』 공천(公賤) 조. 이극중(1492), “大典續錄” 조선시대 법령자료(2023.4.25.). 박훈평, 이정현, 남성우, 변일구, 구자훈. 앞의 책. p. 386.  
48) 『대전후속록 병전』 복호(復戶) 조. 윤은보(1543), “大典後續錄” 조선시대 법령자료(2023.4.25.). 박훈평, 이정현, 남성우, 변일구, 구자훈. 위의 책. p. 310.  
49) 『대전후속록 형전』 금제(禁制) 조. 윤은보(1543), “大典後續錄” 조선시대 법령자료(2023.4.25.). 박훈평, 이정현, 남성우, 변일구, 구자훈. 위의 책. p. 369.  
50) 조선 전기 조선 정부의 감초에 대한 국산화 노력에 대해서는 이경록, 「조선 전기 감초의 토산화와 그 의미」, 의사학. 2015;24(2):423-455. 참조.  
51) 『경국대전전집 이진』 경관직 조. “습독관도 본업인으로 통칭할 수 있을 것이다.” 『경국대전전집 이진』 포핍 조. “체아직을 둔 아문의 전함관이 도목정사에서 ‘중(中)’을 받으면 다음 시기의 포핍 전에는 서용하지 못한다.” 동양학연구소, 『경국대전주해』. 서울:단국대학교출판부. 1979:10. 박훈평, 이정현, 남성우, 변일구, 구자훈. 위의 책. p. 49, 92.  
52) 의서습독관 등 여러 정책의 시행과 실패는 여러 선행 연구에서 논해진 바 있다. 예를 들어 이경록, 「조선 초기 의료진흥정책의 전개」, 연세의사학. 2020;23(1):7-36.

후반에서 17세기의 변화상을 담은 수교집 『수교집록』에 대해서 주로 분석하였다.

『수교집록』의 의약 관련 규정은 13개이다(부록 5).<sup>53)</sup> 예전(禮典) 관련 규정이 6개로 가장 많다. 이전(吏典) ‘경관직(京官職)’ 관련 규정은<sup>54)</sup> 의료 관료들이 동서반(東西班) 실직(實職)을 제수받는 사례가 증가하는 현실의 반영이다. 이전(吏典) ‘제수(除授)’ 관련 규정은<sup>55)</sup> 의료관청에 재직하는 2품 이상 의학 관료의 자손은 당연히 음직(蔭職)의 대상이 됨을 전제한다. 예전(禮典) ‘취재(取才)’ 관련 규정은<sup>56)</sup> 의학 관료가 과거장에 들어가 대신 답안지를 써줄 만큼 한문 소양을 갖추었음을 보여주는데, 기술직 중인 계층이 한문 향유 계층으로의 성장이라는 시대상을 보여준다. 예전(禮典) ‘장권(獎勸)’에 속하는 규정은 4개로 의학 교육에 대한 위정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드러난다. 그런데 의학 취재 관련 내용이 많은 것으로 보아 의과(醫科)에 이어 취재도 체계화되면서 세부적인 규정이 도입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수교집록』보다 앞선 시기의 수교집인 『대전속록』에서 취재를 통한 양의사(兩醫司) 관원의 임용을 명문화함에<sup>57)</sup> 이어 『대전후속록』에서는 전의감 주부 등을 의과 출신자만을 위한 자리로 규정하였다.<sup>58)</sup> 의과와 취재가 양의사 관원을 임용하는 확실한 수단이 된 셈이다. 이런 명문화 규정은 그 이전에는 의과 출신만이 의관이 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다. 예를 들어 허준(許浚)은 의과나 취재가 아닌 천거에 의하여 내의원에 합류하였다. 예전(禮典) ‘장권(獎勸)’ 관련 1개 규정에서 의서습독관이 언급되긴 하였으나, 조선 전기의 문헌에서처럼 자주 언급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외방의생의 권장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의과를 중시하며 의료관료가 되는 다른 길을 제한하는 것은 당시 중앙의 의학 관료가 일부 유력 가문 출신들로 채워져 가는 현실<sup>59)</sup>과

연관되어 보인다.

이상 임진왜란 이후 17세기 초반까지의 수교집들은 기술직 중인 가문의 성장을 반영한다. 또한 의관의 사회적 지위 상승과 한문 소양의 증진이라는 시대적 상황도 담고 있다. 당시에 이르러 조선 전기와 달리 의과와 취재가 양의사(兩醫司) 관원을 임용하는 확실한 수단이 되었다. 외방의생의 중앙관청으로의 신규 진입<sup>60)</sup>이나 의서습독관으로의 문신 유인 등은 약화되면서, 의과와 취재는 일부 유력 가문 출신들이 중앙의 의료 관료직을 독점하기 위한 방법이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조선 전기 국가가 시도했던 여러 의학 진흥책이 실패하면서, 의료 기술의 향상과 전문성을 위한 일종의 용인이었다. 『대명률』의 ‘의호(醫戶)’ 규정이 실제적으로 적용되면서 명문화되었던 ‘의업의 세습’이 제도적으로 현실화가 되었다. 물론 의업의 세습은 『대명률』의 규정을 떠나 『예기(禮記)』의 ‘의불삼세(醫不三世) 불복기약(不服其藥)’에서 이야기되는 것처럼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개념이었다. 그러나 이를 법령에 명문화하는 것과 명문화하지 않은 것은 분명 차이가 있다.

## 2) 의료 관련 법령의 재정비 - 『신보수교집록(新補受教輯錄)』과 『속대전(續大典)』

영조대에는 1743년(영조 19)에 수교집 『신보수교집록』이 간행되고, 숙종대의 『전록통고』와 성격이 유사한 『증보전록통고(增補典錄通考)』에 이어 1746년(영조 22)에 이전의 수교를 반영한 두 번째 통일 법전인 『속대전』이 간행된다. 『증보전록통고』는 새로운 의약 관련 조문이 없으므로 다른 두 책만 조사하였다.

『신보수교집록』에만 수록된 의약 관련 규정은 9개이다(부록 6). 이전(吏典) ‘경관직(京官職)’ 관련 치종교수(治腫

53) 『수교집록』에는 이전 수교집인 『각사수교』의 수교도 일부 수록되었는데 이러한 내용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54) 『수교집록 이전』 관직 41. “삼의사 관원 중 이미 본 아문에서 6품의 관직을 거친 사람에게 동·서반 實職을 제수할 때에는 모두 처음 관직을 시작하는 사람의 예를 따르되, 품계에 따라 去官하는 일은 전례에 따라 시행한다.” 이익, 윤지완, 최석정(1698) “受教輯錄” 조선시대 법령자료(2023.4.25.). 박훈평, 이정현, 남성우, 변일구, 구자훈. 앞의 책. p. 50.

55) 『수교집록 이전』 관직 40. “삼의사 3품 관원의 자손에게는 음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익, 윤지완, 최석정(1698) “受教輯錄” 조선시대 법령자료(2023.4.25.). 박훈평, 이정현, 남성우, 변일구, 구자훈. 위의 책. p. 86.

56) 『수교집록 예전』 과거 279. “삼의사의 관원 ... 들이 혹 대신 써주기 위하여 과거장에 함부로 들어오면 예전에 잡과에 합격한 이는 생원과 진사의 전례에 따라 증군하고, 잡과에 합격하지 못한 이는 전가사변(全家徙邊)한다.” 이익, 윤지완, 최석정(1698) “受教輯錄” 조선시대 법령자료(2023.4.25.). 박훈평, 이정현, 남성우, 변일구, 구자훈. 위의 책. p. 227.

57) 『대전속록 이전』 구임 조. “전의감·관상감·혜민서의 구임관은 모두 취재시험을 시행한 후 성적의 순위에 따르고, 전의감·관상감의 관관 이상과 혜민서 직장 이상의 관원도 품계를 높이거나 낮추어 임명한다. 취재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참봉으로 임명한다.” 이극중(1492), “大典續錄” 조선시대 법령자료(2023.4.25.). 박훈평, 이정현, 남성우, 변일구, 구자훈. 위의 책. p. 48.

58) 『대전후속록 예전』 제과 조. “사역원 주부 이상의 직임은 관상감과 전의감의 전례를 따라 과거 합격자를 제수한다.” 윤은보(1543), “大典後續錄” 조선시대 법령자료(2023.4.25.). 박훈평, 이정현, 남성우, 변일구, 구자훈. 위의 책. p. 179.

59) 박훈평. 「19세기 후반 전의감 의학생도에 대한 고찰」. 한국의사학회지. 2013;26(1):5.

60) 예를 들어 앞선 시기 『대전속록』의 권장 조문을 보면, 글자를 아는 외방의생 가운데 연소총민(年少聰敏)으로의 승격이 가능하였다.



教授) 규정은<sup>61)</sup> 이 직임이 의학 관료가 참상관(參上官)으로 올라가는 디딤돌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자리를 옮긴다.”는 이 자리를 거쳐 다른 6품직 동반(東班) 실직(實職)에 임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추증(追贈)’ 관련 규정은<sup>62)</sup> 당시 의관이 참판(參判)과 총관(摠管)이 아니라면 여러 직임을 증직으로 받았다는 근거도 된다. 형전(刑典) ‘장도(贓盜)’ 관련 규정은<sup>63)</sup> 『대명률』이 형율(刑律)로서 계속적으로 적용됨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내용 중에서 언급된 관상감 교수(觀象監教授) 직임의 경우도 정해진 근무 일수만 채우면 자동으로 동반 참상직이 되어서 영조 때 관상감 관원들의 유용한 승진 창구가 되었다.<sup>64)</sup> 형전(刑典) ‘금제(禁制)’ 관련 규정은<sup>65)</sup> 당시 가짜 인삼(人蔘)이 횡행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사령(赦令)’ 관련 조문은<sup>66)</sup> 왕실 인사의 질병이 회복됨에 죄수들을 사면함을 명문화한 것으로 이전에 없던 새로운 내용이다.

『속대전』이 『경국대전』과 다른 의약 관련 규정은 21개이다(부록 7). 기존 수교집들에 실렸던 내용이 그대로 명문화되는 경우가 7개 조에 달한다.<sup>67)</sup> 『경국대전』 이후 변화된 현실을 반영한 수교가 정식으로 국가 법전의 규정이 되는 것이다. 그 외 이전(吏典) ‘경관직(京官職)’ 관련과 예전(禮典) ‘생도(生徒)’ 관련 규정은 의관과 의료관청의 서리(書吏)를 줄이고 의생을 늘리는 변화를 보여준다. 그런데 예전

(禮典) ‘권장(勸獎)’ 규정을 보면 조선 전기 의학 진흥책으로 중시되었던 의학습독관 등에 대한 보완 등이 전혀 없으므로, 이 시기 습독관(習讀官)은 더 이상 중시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양의사에서 오래 근무한 관원을 해마다 자동으로 천전(遷轉)시키는 규정은<sup>68)</sup> 앞서 『신보수교집록 이전(吏典)』 ‘경관직(京官職)’ 조의 치종교수 사례처럼 의학 관료가 동반 6품직을 제수받는 기회를 확대해주었다. 예전(禮典) ‘취재(取才)’ 조문은<sup>69)</sup> 조선 후기 의과 과목의 변화상을 보여준다.<sup>70)</sup> 과목은 8종인데 『경국대전 예전』 ‘제과(諸科)’ 조의 규정과 비교하면 6종이 빠지고 3종이 추가되었다. 이는 다음의 사실을 설명한다. 중국 명대 의학의 도입, 경험방서보다는 분과 전문의서와 종합의서 위주의 재판, 금원사대가 의학의 재조명이다.<sup>71)</sup> 형전(刑典) ‘장도(贓盜)’ 규정은<sup>72)</sup> 『대명률』 계통의 의료 관련 형율이 국가 법전으로 귀속됨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선행 연구에서도 형율이 『속대전』 이후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형전으로 편입됨을 밝혔다.<sup>73)</sup>

이상 영조대의 의료 관련 법령 변화를 보면 조선 전기 주요한 의학 진흥책이었던 습독관과 외방의생에 대한 정책이 약화되었다. 또한 별도로 존재했던 『대명률』의 형율 내용이 법전 안에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의료 관료의 지위 상승이 지속되었다.

- 61) 『신보수교집록 이전』 경관직 19. “관상감교수·이문학관은 45개월마다 자리를 옮기고, 치종교수(治腫教授)도 이 방식을 따른다.” 조현명(1739) “新補受教輯錄” 조선시대 법령자료(2023.4.25.). 박훈평, 이정현, 남성우, 변일구, 구자훈. 앞의 책. p. 52-53.
- 62) 『신보수교집록 이전』 경관직 51. “의관·역관·중인·서인에게는 참판과 총관을 증직으로 줄 수 없으며” 조현명(1739) “新補受教輯錄” 조선시대 법령자료(2023.4.25.). 박훈평, 이정현, 남성우, 변일구, 구자훈. 위의 책. p. 96.
- 63) 『신보수교집록 형전』 장도 964. “왕실의 약을 담는 데 사용하는 은그릇을 훔친 죄인을 그 위삼촌이 신고하였다. 율문의 ‘소공친(小功親)’이 대신 자수할 때 처벌하는 조문’을 참고하여 특별히 사형에서 등급을 낮추어 정배(定配)하라.” 조현명(1739) “新補受教輯錄” 조선시대 법령자료(2023.4.25.). 박훈평, 이정현, 남성우, 변일구, 구자훈. 위의 책. p. 363.
- 64) 경석현. 「조선 영조 대 천문학겸교수의 운용과 활동 양상」, 조선시대사학회. 2019;91:113-153.
- 65) 『신보수교집록 형전』 금제 1219. “약재 가운데 인삼에다 다른 약재를 붙여 완전한 인삼으로 만든 후 몰래 팔다가 적발될 경우, 인삼 상인은 은전을 만든 죄와 마찬가지로 형율을 적용한다.” 조현명(1739) “新補受教輯錄” 조선시대 법령자료(2023.4.25.). 박훈평, 이정현, 남성우, 변일구, 구자훈. 위의 책. p. 373-374.
- 66) 『신보수교집록 형전』 사령 1340. “세자가 두역(痘疫)을 앓고 난 뒤에는 당시 옥에 갇힌 죄수 가운데 잡범이면서 사형죄 이하에 해당하는 자에게 승지가 달려가서 일일이 석방해 주도록 하라.” 조현명(1739) “新補受教輯錄” 조선시대 법령자료(2023.4.25.). 박훈평, 이정현, 남성우, 변일구, 구자훈. 위의 책. p. 408.
- 67) 부록 7에서 해당 수교집을 관련 내용에 기재하였다.
- 68) 『속대전 예전』 장권 조. “해마다 도목정사 때 사자관이나 양의사·관상감·도화서·사역원에서 오래 근무한 관원은 이조에 공문을 보내어 천전(遷轉)한다.” 서종욱, 김약로, 이종성, 이일제, 김상성(1746) “續大典” 조선시대 법령자료(2023.4.25.). 박훈평, 이정현, 남성우, 변일구, 구자훈. 위의 책. p. 248.
- 69) 『속대전 예전』 취재 조. “『찬도맥』·『동인경』(책을 등지고 외운다), 『직지방』·『본초』(이상은 『경국대전』에 나온다), 『소문』·『동원심서』·『의학정진』(새롭게 추가했다. 이상은 책을 보고 풀이한다), 나머지 책은 모두 폐지했다.” 서종욱, 김약로, 이종성, 이일제, 김상성(1746) “續大典” 조선시대 법령자료(2023.4.25.). 박훈평, 이정현, 남성우, 변일구, 구자훈. 위의 책. p. 230.
- 70) 세종과 세조연간의 의과 과목의 변화에 대하여 『의방유취』의 편찬, 의과시험의 난이도, 의학교과서 수급의 문제라 추정된 바 있다. 국수호. 「세종과 세조연간의 의학교과서 변화에 대한 고찰」. 한국의사학회지. 2022;35(1):59-67. 의학 교과서의 변화는 국가 의학 정책 기초, 의료 인력 수급, 현실적인 인력 배양 문제와 모두 관련이 있다.
- 71) 박훈평. 「조선시대 의학교과서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16;29(2):1-16.
- 72) 『속대전 형전』 장도 조. “수라간의 물건을 훔친 자는 국가의 제례에 사용하는 물품이나 신령이 사용하는 물품을 훔친 것과 같은 형율을 적용한다.” 서종욱, 김약로, 이종성, 이일제, 김상성(1746) “續大典” 조선시대 법령자료(2023.4.25.). 박훈평, 이정현, 남성우, 변일구, 구자훈. 위의 책. p. 364.
- 73) 김백철. 「조선 후기 영조대 법전정비와 속대전의 편찬」. 역사와 현실. 2008;68:207-209.

### 3) 규정의 소극적 정비 및 보완 - 18세기 후반 이후의 변화

정조대 간행된 세 번째 통일 법전인 『대전통편(大典通編)』(1785년 간행)은 이전 국가 법전과 달리 기존 법령을 통합한 것이 아니라 정조대의 수교만을 보충하였다.<sup>74)</sup> 『대전통편』이 『속대전』과 다른 의약 관련 조문은 5개 조문이다(부록 8). 서얼 허통으로 한품서용(限品敍用) 관련 규정이 바뀌는 변화가 명문화되는 등 기존 규정들을 보완하는 정도에 그치고 본질적인 변화는 없다. 이는 정조대에 별도의 세칙(여러 절목(節目)과 기타 법제서)이 만들어져 국전의 형전과 예전을 보완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예전(禮典)의 보완으로 구휼(救恤) 관련되어 『흙휼전칙(欵恤典則)』과 『자휼전칙(字恤典則)』, 형전(刑典) 보완과 관련되어 법의학서인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 국왕의 관례집인 『심리록(審理錄)』이 편찬되었다.<sup>75)</sup>

『대전통편』 이후의 수교집은 1794년(정조 18)의 『특교정식(特敎定式)』과 순조연간(1801-1834년 사이)의 『수교정례(受敎定例)』가 있다. 『특교정식』은 대체로 형율과 행정 절차를 담고 있어 해당 의료 관련 조문도 형전에 속하는 내용이 많다. 『수교정례』는 별다른 의약 관련 조문이 없다.

18세기 후반 이후 수교집의 의약 관련 조문은 5개이다(부록 9). 형전(刑典) ‘잡령’과 ‘추단(推斷)’ 관련 규정은<sup>76)</sup> 지방에 파견되었던 의관직 심약(審藥)을 소속 관청의 장(長)이 사사롭게 처벌하는 등의 일에 대한 금지이다. 이는 문무과(文武科) 출신의 관원들이 심약을 경시함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심약은 특지에 의해 임명한 일부를 제외하면 철저하게 의학 취재의 결과에 의해 임명되었고, 조선 후기 일부 가문들의 의관직 독점에 따라 심약직도 일부 가문의 인물들이 많이 임명되었다.<sup>77)</sup> 따라서 지방에 파견된 심약 이더라도 중앙의 배경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기

술직 중인 가문들은 지위 상승에도 불구하고, 사사롭게 처벌될 정도로 그 한계도 분명했다. 형전(刑典) ‘금지(禁制)’ 관련 규정은<sup>78)</sup> 사적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조선 전기부터 사적인 약재 무역을 금지하는 정책은 정조대까지도 이어져 왔다. 그러나 한양에서 개인 약재 시장은 더욱 증진되어가는 양상을 보였다. 상업의 발달이 촉진되면서 약재의 국가 관리라는 중요 정책도 변화를 요구받고 있었다. 조선 후기 법전에서 약재의 국산화에 대한 내용이 없는 점도 이러한 변화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고종대에 간행된 마지막 통일법전인 『대전회통(大典會通)』(1865년 간행)은 『대전통편』과 형식이 유사하다. 이전 법전에 증보된 내용이 적다. 『대전회통』이 『대전통편』과 다른 의약 관련 조문은 총 3개이다(부록 9). 예전(禮典) ‘제과(諸科)’ 조문을 보면<sup>79)</sup> 명나라 의서 『의학입문(醫學入門)』이 새롭게 의과 교과목으로 규정되었는데, 법전에 들어 오기 이전 1831년(순조 31) 전의감 제조(典醫監 提調)의 상소로 1834년부터 이미 도입된 바 있다.<sup>80)</sup> 정조 이후로 별다른 수교집이 만들어지지 못하는 상황은 왕권 약화에 따른 사법의 문란과 관련된다. 『대전회통』은 비변사를 폐지하여 다시 의정부로 귀속시키는 등의 왕권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규정만 손보는 선에서 그치고, 실질적인 보완과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는 순조 이후 철종 초까지 법치 국가로서의 체제가 무너졌음을 의미한다.

이상 18세기 이후 시기에서의 의료 관련 법령은 이전 시기에 비하여 변화가 적다. 특히 순조 대 이후로는 기존 규정들을 보완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순조 대 이후로 국왕의 권위가 약화되면서 국정에서 의료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시도해볼 수 있는 여지가 줄었기 때문일 것이다.

74) 김백철. 「조선 후기 정조대 법제 정비와 대전통편 체제의 구현」. 대동문화연구. 2008;64:344-348.

75) 김백철. 『탕평시대 법치주의 유산』. 파주:경인문화사. 2016:126-130.

76) 『특교정식』 본조품정(本曹稟定). “이조에서는 심약의 일을 진술했으나 검율(檢律) 또한 임의로 파면하여 내보내는 폐단이 있으니 한결같은 규정으로 하지 못하게 함이 마땅합니다.” ... “엄중히 금하여 함부로 파직시키지 못하게 하라. ...” 『특교정식』 비국품정(備局稟定). “... 이후로 의관·역관·율관 등 각 과의 본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소속 아문이나 상부 관청에 상관없이 懸罰을 시행하지 말도록 규정으로 정하여 분부함이 어떻습니까?” ... “그대로 시행하라.” 예조(1794), “特敎定式” 조선시대 법령자료 DB(2023.4.25.). 박훈평, 이정현, 남성우, 변일구, 구자훈. 앞의 책. p. 98, 340-341.

77) 박훈평. 「조선시대 의관직 심약에 대한 고찰」. 한국의사학회지. 2015;28(2):68-69.

78) 『특교정식』 금약국현판(禁藥局懸板). “... 약국을 여는 경우가 많아 마음에 늘 잘못이라 여겼기를 심지어 관청 근처에서까지 현판을 걸고 약국을 열고 있다. ... 즉시 명하여 없애고 해당 관청의 관원과 담당 내시를 중죄 쪽으로 추고(推考)하라. ...” 예조(1794), “特敎定式” 조선시대 법령자료 DB(2023.4.25.). 박훈평, 이정현, 남성우, 변일구, 구자훈. 앞의 책. p. 98, 380.

79) 『대전회통 예전』 제과 조. “... 『의학입문』 새로 추가되었다. ...” 조두순, 김병학(1865) “大典會通” 조선시대 법령자료 DB(2023.4.25.). 박훈평, 이정현, 남성우, 변일구, 구자훈. 위의 책. p. 187.

80) 박훈평. 「조선시대 의학교과서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16;29(2):14.

### III. 결론

본고를 통해 조선시대 법전에 규정된 시행 법령 조문을 모두 조사하여 조선시대 주요 의료 분야 쟁점과 관심사를 분석하였다. 다만 의료 제도사 관련 내용은 언급은 하지만 주요하게 다루지는 않았다. 본문에서 검토된 시기별 특성은 다음과 같다.

조선 전기는 세 시기로 구분된다. 먼저 조선은 개국하면서 법령의 공백을 유교적 덕치에 부합하는 명나라의 법전인 『대명률』의 적극적 수용으로 채웠다. 『대명률』이 조선의 의료 규정에 미친 영향을 보자면, 첫째 의업 세습의 보장, 둘째 기존 법령에 미비했던 형율의 보완, 셋째 유교적 덕치에 부합한 규정들의 준용이다. 다음으로 『경국대전』의 완성 은 조선의 의료 법령의 기초를 마련하는 계기였다. 『경국대전』은 유교적 덕치에 부합하는 의료 법령을 강조했으며, 의학 교육을 중시하였다. 마지막으로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는 기존 의약 진흥책과 향약 중시가 지속되었다. 그런데 기존의 의약진흥책이 정말 효과적이었다면 연달아 진흥책을 시도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조선의 위정자에게 있어 유교적 덕치에 입각한 의료 정책이 필요하여 국가주도의 진흥책을 유지는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그 정책의 한계와 실패를 반영하여 새롭게 시도할 다른 대안을 찾지 못했다.

조선 후기 역시 세 시기로 구분된다. 먼저 16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초반의 시기는 기술직 중인 가문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결과는 조선 전기 국가 주도의 여러 의학 진흥책이 실패하면서, 의료 기술의 향상과 전문성을 위한 일종의 용인이었다. 영조대는 의료 관련 법령의 재정비 시기였다. 조선 전기 주요한 의학 진흥책이었던 습독관과 외방의생에 대한 정책이 약화되었다. 또한 별도로 존재했던 『대명률』의 형율 내용이 법전 안으로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의료 관료의 지위 상승이 지속되었다. 마지막으로 18세기 후반 이후는 소극적 규정 정비 및 보완 시기이다. 정조대를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의료법의 개정이 이루어지거나 반영되지 못했다. 이 시기의 통일법전도 이전 시기와 달리 실질적인 개정을 반영하지 못했다. 19세기 들어 왕권이 약화되면서 국가의 행정 체계가 약화를 초래하였고 의약 정책도 제한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총괄하여 의료에 대한 위정자들의 지향을 살펴보자면 조선 전기의 경우 유교적 덕치에 부합하려는 국가주도

의 정책 중시가 확인되며, 조선 후기의 경우 국가 주도에서 기술직 중인 가문 주도로 전환이 이루어졌다. 물론 중인 가문 주도란 이를 국가가 용인해 주는 선 안에서만 가능했다. 의료 기술 향상과 전문성 담보를 위한 위정자들의 선택이었다.

한 시대의 법령 규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 시대의 정치, 문화와 사회 등 전반적인 이해가 요구된다. 그런 점에서 법령의 한 조문의 흐름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이 요구된다. 본고는 전체적으로 법전 규정의 흐름을 일별하였기에 분명 개별적 조문의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어떤 면에서는 충분한 사료 분석과 고증에 따른 논의라기보다는 인상에 가까운 서술이기도 하다. 그러나 시행법령을 통한 전체적인 조선 의료 조망이라는 본 시도를 통해 새로운 주제를 발굴하고 심화된 연구가 추동되기를 기대해본다.

### 참고문헌

1. 경석현. 「조선 영조 대 천문학겸교수의 운용과 활동 양상」. 조선시대사학회. 2019;91:113-153.
2. 국수호. 「세종과 세조연간의 의학교과서 변화에 대한 고찰」. 한국사학회지. 2022;35(1):59-67.
3. 김대기. 「중국 원대 의료관원의 선발과 관리」. 의사학. 2017;26(3):455-502.
4. 김백철. 「조선 후기 영조대 법전정비와 속대전의 편찬」. 역사와 현실. 2008;68:189-236.
5. 김백철. 「조선 후기 정조대 법제 정비와 대전통편 체제의 구현」. 대동문화연구. 2008;64:337-382.
6. 김백철. 『탕평시대 법치주의 유산』. 파주:경인문화사. 2016: 95-96, 126-130.
7. 김백철. 『법치국가 조선의 탄생』. 2판. 서울:이학사. 2017: 146-147.
8. 김택민, 하원수 주편. 『천성령 역주』. 서울:혜안. 2013: 479.
9. 동양학연구소. 『경국대전주해』. 서울:단국대학교출판부. 1979:10.
10. 박광준. 『조선왕조의 빈곤정책』. 서울:문사철. 2018: 342-343.
11. 박병호. 「한국에 있어서의 법과 윤리도덕」. 저스티스.

- 1992;25:80-85.
12. 박병호. 『근세의 법과 법 사상』. 서울:진원. 1996:429-430.
  13. 박훈평. 「19세기 후반 전의감 의학생도에 대한 고찰」. 한국의사학회지. 2013;26(1):1-7.
  14. 박훈평. 「조선시대 의관직 심약에 대한 고찰」. 한국의사학회지. 2015;28(2):59-72.
  15. 박훈평. 「조선시대 지방 의생 제도에 대한 고찰」. 한국 의사학회지. 2016;29(1):1-9.
  16. 박훈평. 「조선시대 의학교과서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16;29(2):1-16.
  17. 박훈평. 「조선 후기 중앙군영의 군진의학 제도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22;35(1):1-11.
  18. 박훈평. 「조선 후기 내의원 의관의 직임과 인사」. 한국 의사학회지. 2022;35(1):45-57.
  19. 박훈평, 이정현, 남성우, 변일구, 구자훈. 『조선의 의료 제도』. 대전:한국한의학연구원. 2022:1-983.
  20. 손홍렬. 『한국중세의 의료제도연구』. 서울:수서원. 1988: 103-114.
  21.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고려시대 율령의 복원과 정리』. 서울:경인문화사. 2009:36, 335, 423, 692-696.
  22. 이경록. 「조선 전기 감초의 토산화와 그 의미」. 의사학. 2015;24(2):423-455.
  23. 이경록. 「조선 초기 성리학적 의료관과 의료의 위상」. 의료역사연구. 2018;1(1):9-37.
  24. 이경록. 「조선 초기 의료진흥정책의 전개」. 연세의사학. 2020;23(1):7-36.
  25. 정공식. 『조선의 법치주의 탐구』. 과주:태학사. 2018: 19-39, 74-75.
  26. 조원. 「여말선초 원제국 법전 지정조격 활용과 그 의미」. 포은학연구. 2022;29(1):91-120.
  27. 조지만. 『조선시대의 형사법』. 서울:경인문화사. 2007: 200-201.
  28. 최이돈. 「조선 초기 향리의 지위와 신분」. 2010;110: 55-94.
  29. 국사편찬위원회(2016-2020). 조선시대 법령자료 DB (2022.12.15.)
  30. 강위빙(1874). “惠局志” 규장각 원문 검색 서비스(2023. 4.25.)
  31. 고사경, 김지(1395). “大明律直解” 조선시대 법령자료 (2023.4.25.)
  32. 서종욱, 김약로, 이종성, 이일제, 김상성(1746). “續大典” 조선시대 법령자료(2023.4.25.)
  33. 실록청(1413-1935). “朝鮮王朝實錄”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DB (2022.12.15.)
  34. 예조(1794). “特敎定式” 조선시대 법령자료 DB(2023. 4.25.)
  35. 윤은보(1543). “大典後續錄” 조선시대 법령자료 DB (2023.4.25.)
  36. 이극중(1492). “大典續錄” 조선시대 법령자료 DB(2023. 4.25.)
  37. 이익, 윤지완, 최석정(1698). “受敎輯錄” 조선시대 법령 자료 DB(2023.4.25.)
  38. 조두순, 김병학(1865). “大典會通” 조선시대 법령자료 DB(2023.4.25.)
  39. 조현명(1739). “新補受敎輯錄” 조선시대 법령자료 DB (2023.4.25.)
  40. 최항, 노사신, 서거정(1484). “經國大典” 조선시대 법령 자료 DB(2023.4.25.)

부록<sup>81)</sup>

1. 『대명률직해』의 의약 관련 조문 일람<sup>82)</sup>

|     | 典 | 조문 | 내용  |
|-----|---|----|---|
| 1   | 호 | 戶籍 | 의약(醫藥) ... 등 각종 人戶는 모두 호적으로 실체를 정한다. 농간을 부려 역을 면하려고 무거운 역을 피해 가벼운 역을 지러 한 자는 장형 80대에 처한다. / 권4 호율 호역(戶役)  |
| 2   | 병 | 救恤 | 군사가 방어소에 있거나 정부나 각종 장인 등이 요역을 서는 곳에 있다가 질병이 들었는데, 담당 관사에서 의원과 약을 요청하여 질병을 치료하지 않으면 태형 40대에 처한다. 이에 따라 죽으면 장형 80대에 처한다. ... / 권26 형을 잡범(雜犯)  |
| 3   |   | 雜令 | 유능한 의원이 관청의 약재를 수령하여 군사에게 가게 되었다가 직접 가지 않고 무능한 의원에게 재물을 주어 대신 가게 하면 각각 장형 80대에 처한다. 대신 간 사람이 받은 재물은 관청에 몰수한다. / 권14 병을 군정(軍政)   |
| 4-5 | 형 | 用律 | ◎여섯째, 大不敬이다. ... 대불경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 황제에게 올리는 약을 책에 실린 처방에 따르지 않고 조제하거나 약 봉투에 이름을 잘못 쓴 경우 ... / 권1 名例律 ◎진상하는 약을 조제할 때 잘못하여 본방에 따른 방법대로 하지 않거나 약 봉투에 이름을 잘못 쓴 의원은 장형 100대에 처한다. 약재를 섞을 때 정밀하게 다루지 않으면 장형 60대에 처한다. ... ◎잡약 등을 감람제조관이나 반감 및 사옹원 사람 등이 임금의 음식을 만드는 곳에 실수로 가지고 오면 장형 100대에 처하고, 앞서 말한 잡약을 본인이 먹게 한다. / 권12 예율 의제(儀制) |
| 6   |   | 恤囚 | 죄수에게 옷·양식·의약을 지급하는 것이 이치에 합당하다. ... 이것 때문에 죄수가 죽은 경우, 죄수가 사형되면 장형 60대에 처하고, 유죄이면 장형 80대에 처하고, ... / 권28 형을 단옥(斷獄)   |
| 7   |   | 殺獄 | 일반 의원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약·침·뜸을 쓸 때 착오로 본방의 글에 따르지 않아 그로 인하여 죽게 되면, 다른 의원에게 약재와 혈도를 조사하도록 한다. 애초에 고의로 해치려는 정황이 없었으면 과실 살인의 사례로 논하고 의업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한다. ... 이로 인하여 죽게 하거나 어떤 일을 방지하여 약을 써서 사람을 죽이면 참형이다. / 권19 형을 인명(人命)  |

81) 표의 분류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운영하는 조선시대 법령자료 DB를 따랐다. 해당 책의 실제 분류는 내용 끝에 넣었다. 이하 조문 관련 표도 같다. 표에서 ‘...’는 내용을 줄일 때 사용하였다. 【 】는 원문의 주석이다.

82) 박훈평, 이정현, 남성우, 변일구, 구자훈. 『조선의 의료 제도』. 대전:한국한의학연구원, 2022:102, 311-312, 322, 333-336, 348, 401.

2. 『경국대전』의 의약 관련 조문 일람<sup>83)</sup>

| 典     | 조문    | 내용  |   |
|-------|-------|---|---|
| 1     | 內命婦   | [내명부] ... 정8품 典贊·典飾·典藥 ... [세자궁] 종9품 掌藏·掌食·掌醫.  |   |
| 2     | 京官職   | [내의원] 왕실에서 쓰이는 약의 조제를 맡는다. ... [전의감] 궐내에서 쓸 의약과 특전으로 줄 의약을 맡는다. ... [혜민서] 일반 백성들을 의약으로 치료하는 일을 맡는다. ... [활인서] 도성 안의 급한 환자들에 대한 구제를 맡는다. ...   |   |
| 3     | 外官職   | [경기] ... 종9품 심약 1원 ... [충청도] ... 종9품 심약 2원 【1원은 절도사도에 둔다.】 ... [평안도] ... 심약 2원 【1원은 절도사도에 둔다.】  |   |
| 4     | 京衙前   | [내의원] ... 서리 4인 ... [혜민서] ... 서리 2인 ...   |   |
| 5     | 이     | 諸科  | 음양과·의과·율과에서 1등으로 합격한 사람은 모두 종8품을, 2등은 정9품을, 3등은 종9품을 준다.  |
| 6     | 이     | 限品 敍用   | ... 【2품 이상 관리가 첩에게서 본 자손은 재능에 따라 사역원·관상감·전의감·내수사·혜민서... 부문의 관직에 등용할 수 있다.】  |
| 7     | 호     | 諸田  | ... 【혜민서의 種藥田은 모두 조세가 없다.】 ...  |
| 8     | 諸科    | [제과] 3년에 1번씩 시험을 보는데 그 이전 해 가을에 初試를, 그해 봄에 覆試·殿試를 보게 한다. ... (의과 과목 등 기재)   |   |
| 9     | 生徒    | [전의감] 의학생도 50인이다. [혜민서] 의학생도 30인이다. ...   |   |
| 10    | 取才    | [취재] 여러 學. 1·4·7·10월에 본 예조에서 각 제조와 함께 취재시험을 거행하되, 제조가 없는 아문에서는 해당 육조의 당상관과 함께 취재시험을 거행한다. ...   |   |
| 11-13 | 獎勸    | ◎의서 습독관은 읽은 책들을 일과에 기록해야 한다. 예조에서 제조와 함께 고강한 후 여러 책에 능통한 자는 주상에게 아뢰어 顯官 [주요 관직]을 제수한 다음 본직을 겸임하게 한다. ... ◎의학 생도와 여의는 제조가 달마다 고강한다. 여의 중 점수를 많이 받은 자 3인에게는 3개월 동안 料[수당]를 지급한다. ... ◎의원 중, 의서에 해박하지 못하더라도 瘡腫이나 惡疾을 잘 치료하여 가장 많은 효험을 본 한 사람은 歲抄하여 주상에게 아뢰어 후 임용한다. ... |   |
| 14-20 | 예     | 惠恤  | ◎환자가 한성의 五部에 요청하면 즉시 月令醫를 보내어 치료하고, 가난하여 약재를 살 수 없는 사람에게는 관청에서 약재를 주고 예조에 보고한다. ... ◎의금부·성균관·전옥서에는 각각 월령의 1명을 정하여 병이 있는 유생이나 죄수들을 치료하게 한다. ◎환자가 긴급히 의원에게 치료를 신청하면 의원은 즉시 가서 치료해야 한다. 즉시 가서 치료하지 않으면 환자의 집에서 신고하여 죄를 다스릴 수 있다. ◎월말마다 본 예조에서는 환자를 치료한 의원들의 근무 실태를 조사하여 장부에 기록하였다가 이를 근거로 殿最[성과 평가]한다. ◎중친이나 2품 이상의 관원이 위급한 병으로 의약 관청에 없는 약을 요청하면 승정원에서 주상께 보고하여 지급한다. ◎온천이 있는 곳의 수령은 성실한 사람을 선정하여 건물을 수리하고 환자를 구제해야 한다. ◎북경에 가는 사신과 명나라 사신이 오고 갈 때 평안도 관찰사는 의생 1명을 선정하여 일행 중 병이 있는 사람을 치료하고 내버려 두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사망자가 있으면 묻어 주고 冢말을 세워준다. |
| 21    | 選上    | [선상] 각 고을에서는 3년마다 젊은 여중 가운데 기생 150명, 연화대 10명, 여의 70명을 뽑아 도성으로 보낸다. ...  |   |
| 22    | 병     | 番次都目  | [습독관] 훈련원·사역원·관상감·전의감에 둔다. ... [의원] 의정부와 육조에 각 3원, 종친부·충훈부·도총부에 각 2원을 둔다. ...   |
| 23    | 給保    | ... 【사역원·전의감·관상감 관원과 생도, 혜민서 관원·산원·율원과 생도, ... 등의 각 관원과 馬醫 ... 醫生 ... 중국에 보내는 돛자리를 만드는 장인은 동거하고 있는 친족 중에서 1명의 신역들을 면제한다.】 ...   |   |
| 24    | 형     | 賤妻妾子女   | ... 【집에서 데리고 사는 기생이나 여의가 낳은 자녀 이외에는 양인이 되는 것을 금지한다.(대소신료도 같다)】 ...  |
| 25    | 諸司差備奴 | [내의원] 差備奴 7명, 根隨奴 7명 ...  |   |

83) 앞의 책. p. 43, 45-47, 71-75, 78, 84, 90, 179, 196, 224-225, 233-234, 257-258, 271, 297, 307, 381-382, 391.

3. 15-16세기 수교집의 의약 관련 조문 일람<sup>84)</sup>

|       | 典 | 조문    | 내용  |
|-------|---|-------|---|
| 대전속록  |   |       |   |
| 1     | 이 | 경관직   | 전의감·관상감·혜민서의 구입관은 모두 취재시험을 시행한 후 성적의 순위에 따르고, 전의감·관상감의 관관 이상과 혜민서 직장 이상의 관원도 품계를 높이거나 낮추어 임명한다. 취재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참봉으로 임명한다. / 이전 구입  |
| 2     |   | 除授    | ◎관상감의 습독관 가운데 오래 근무하여 算學에 정통한 이는 東班으로 임용한 후 관상감을 겸임하게 하고, 지방에 임용하지 않는다. 의서습독관 및 한학습독관도 동일하다. / 이전 제수 ◎내의원의 습독관 가운데 체아직을 받지 못한 이는 각자 해당 관청의 취재시험을 다시 보게 하여 그 점수에 따라 직임을 제수한다. / 이전 제수  |
| 3     |   |       |   |
| 4     | 호 | 徵債    | 물품이 부족하거나 망실된 경우. ... 내의원·관상감·전의감 ... 혜민서 ... 활인서 ... 등의 각 관청은 자질구레한 물품을 제외하고 한성부에서 징수하여 물품을 준다. / 호전 징채  |
| 5     |   | 징채    | ... 중국에 간 역관이나 의원이 구입한 중국 물품을 바칠 때 수량을 채우지 않은 자 ... 에 대해서는 모두 징수를 면제할 수 없다. / 호전 징채   |
| 6     |   | 잡령    | 중국산 약재의 구매는 정해진 가격에 의해서 하고 시장 가격으로 하지 않는다. 면포 1필당 쌀 7되가 기준이다. / 호전 唐物貿易   |
| 7-11  | 예 | 장권    | ◎내의원 습독관의 曾時讀講은 내의원 제조가 매달 3회 고강하고, 점수에 따라 전체를 따진 후 녹을 주는 체아직으로 올리거나 내려 제수한다. 본업에 정통한 이는 주상에게 아뢰어 顯職을 제수한다. / 예전 장권 ◎年少聰敏이나 학습에 적합한 의녀는 선발 후 교관을 나누어 가르치면서 날마다 書徒하게 한다. ... 학습의 성과는 교관의 殿最 때 근거로 삼는다. / 예전 장권 ◎외방의 생의 교육은 교수나 훈도가 겸직하여 주관한다. 관찰사의 고강 결과, 의서에 정통했다면 그 집을 完護해주고, 미련하여 이해하지 못한 자는 充軍한다. ... / 예전 장권 ◎藥夫 父子는 다른 역에 배정하지 말고, 본업을 대대로 잇게 한다. / 예전 장권 ◎글자를 아는 외방의생 가운데 年少聰敏으로 뽑는 인원수. 경기는 광주·여주·파주 각 1인이다. ... / 예전 장권 |
| 12-14 |   | 잡령    | ◎각 도에서 심은 감초·마황의 재배 현황을 1년에 1번 내의원 관원에게 전향별감을 겸직하게 하여 擲奸[부정한 일을 조사함]한다. ... / 예전 잡령 ◎내의원에서 사용하는 송절 16근은 한성부의 사산감역관이 해마다 편한 시간에 직접 채취하여 납부한다. / 예전 잡령 ◎중국에 사행 가는 의원은 적당한 사람 중에서 가본 자와 가보지 않은 자를 구분하여 돌아가며 보낸다. / 예전 잡령   |
| 15    | 병 | 번차도목  | 내의원 습독관은 10원으로 부사직 1원, 부사과 1원, 부사정 1원, 부사맹 1원, 부사용 1원이다. 전의감 습독관은 20원으로 사과 1원, 부사맹 2원, 부사용 3원이다. / 병전 체아  |
| 16    | 형 | 禁制    | 의녀의 의복은 한양 기생의 사례를 따르고, 신분 이상의 의복을 금지하지 않는다. / 형전 금제  |
| 17    |   | 천첩처자녀 | 경국대전의 ‘집에서 데리고 사는 기생이나 여의가 낳은 자녀 이외에는 양인이 되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내용은 성화 무술년(1478, 성종 9)의 수교부터 시행되었다. / 형전 천첩처녀  |
| 18    |   | 公賤    |   |
| 19    |   |       |   |
| 대전후속록 |   |       |   |
| 1     | 예 | 제과    | 사역원 주부 이상의 직임은 관상감과 전의감의 전례를 따라 과거 합격자를 제수한다. / 예전 제과   |
| 2-5   |   | 잡령    | ◎각 도에서 나는 약재는 都會官[중심지]서 監封[포장하고 봉인함]여 진상하되, 감찰이 약재의 봉인을 살핀 후 진상한다. / 예전 잡령 ◎중국에 파견되는 의원이 중국 약재를 구매할 때는 次上通事와 함께 구매해야 한다. / 예전 잡령 ◎전의감 및 각 관청 전함관의 사례에 따라, 혜민서의 관원이 녹봉을 받은 후의 근무일을 계산할 때는 관직을 제수받은 날짜로 계산한다. / 예전 잡령 ◎혜민서의 鄉藥材는 上司라 하더라도 반드시 제조가 곳간에서 꺼낸 뒤에야 가져다 쓸 수 있고, 상세히 정해진 수량 외에는 가져다 쓸 수 없다. / 예전 잡령  |

84) 앞의 책. p. 48, 86, 113, 132, 139, 179, 225-226, 234-236, 274-275, 297-298, 310, 369, 382-383, 386, 409.

|    |   |      |  |   |
|----|---|------|--|---|
| 6  | 병 | 번차도목 | ... 중추부 의원은 부사맹 1원, 사옹 1원이다. ... 의서 습독관은 부사과 1원이다. 【품계가 낮은 원록체가 3원을 합쳐서 만들었다.】 도총부 의원은 부사맹 1원이다. 【체아직을 추가로 만들었다.】 ... / 병전 체아  |   |
| 7  |   |      | ... 치종의원 1원 ... 【이상은 형편에 따라 직임을 올리거나 내린다.】 / 병전 遞兒   |   |
| 8  |   | 復戶   | [복호] 전의감·사역원·관상감·혜민서·율학·산학 관원과 생도 ... 의녀 ... 들은 모두 復戶[부역 면제]한다. / 병전 복호  |   |
| 9  | 형 | 禁制   | ◎... 약재·弓角 외에 긴요하지 않은 온갖 물품의 공·사무역은 일절 금지한다. 성절사행·동지사행 외에는 어떤 중국 물품도 구매할 수 없다. / 형전 금제 ◎외국인의 처소에서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는 물건·포목·약재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潛賣禁物>조에 의거하여 죄를 논한다. ... / 형전 금제 |   |
| 10 |   |      | 천첩자녀   | 중친이나 대소 신료가 기생이나 여의를 첩으로 삼은 경우, 역을 받고도 그 역을 수행하기 위해 출입을 하지 않는 천첩을 집에서 데리고 사는 경우의 자녀만 해당한다. / 형전 천첩자녀                |
| 11 |   |      | 잡령   | 중국에 사행을 간 通事[역관] 주의해서 물건을 구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옥에 가두어 추고하되 <制書有違>의 형으로 논하여 처리하고 본래 물품값의 2배를 징수한다. 약재를 구입하는 의원도 같다. / 형전 잡령 |

각사수교

|   |   |    |  |
|---|---|----|--|
| 1 | 예 | 취재 | 취재시험으로 녹직을 줄 때는 1년에 2번 도목정사를 하는 사역원·관상감·혜민서·율학·산학 관원은 6개월을 근무 일수로 정한다. / 46. |
| 2 |   | 장권 | “... 여러 책 가운데 『소문』을 중요한 책으로 삼고, 특별히 2배의 점수를 주어 장려하도록 한다.” / 45.              |

4. 『경국대전주해』의 의약 관련 조문 일람<sup>85)</sup>

|     | 典 | 조문    | 내용   |
|-----|---|-------|--|
| 1-3 | 이 | 경관직   | ◎본업인이란 오로지 해당 학문을 익힌 자만을 지칭하는 것이다. 다만, <예전·장권>에서 ‘의학 교수 중 생원·진사 입격자는 그 근무 일수를 성균관에서 공부한 날에 준한다.’라는 구절의 의도로 미루어 보면 습독관도 본업인으로 통칭할 수 있을 것이다. ... / 전집 이전 경관직 ◎‘醫藥’이라는 말. 醫란 병을 고치는 기술이며, 藥이란 병을 고치는 풀이다. / 후집 이전 육조 ◎왕실에서 쓰이는 약의 조제. 화(和)란 거성이니 조제한다는 뜻이다. / 후집 이전 내의원 |
| 4   |   | 취재    | 『찬도맥』. 西晉의 王叔和가 지었다. 『동인경』. 송나라 사람 王惟一이 지었다. ... / 후집 春官宗伯   |
| 5   | 이 | 포폄    | 체아직을 둔 아문의 전함관이 도목정사에서 ‘中’을 받으면 다음 시기의 포폄 전에는 서용하지 못한다. ... / 전집 이전 포폄   |
| 6   | 병 | 번차도목  | ... 의정부·육조·충훈부·중친부·도총부 의원은 각각 체아직을 번갈아 가며 녹봉을 받는다. ... / 전집 병전 번차도목  |
| 7   | 형 | 천처첩자녀 | 집에서 데리고 사는 자가 아니면 자녀의 아버지를 분별할 수 없으므로 양인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 후집 형전 주관   |

85) 앞의 책. p. 48-49, 81-82, 92, 298-299, 383.



5. 『수교집록』의 의약 관련 조문 일람<sup>86)</sup>

|     | 典 | 조문  | 내용  |
|-----|---|-----|---|
| 1   | 이 | 경관직 | 삼의사 관원 중 이미 본 아문에서 6품의 관직을 거친 사람에게 동·서반 實職을 제수할 때에는 모두 처음 관직을 시작하는 사람의 예를 따르되, 품계에 따라 去官하는 일은 전례에 따라 시행한다. / 이전 관직 41.  |
| 2   |   | 제수  | 삼의사 3품 관원의 자손에게는 음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 이전 관직 40.  |
| 3   | 호 | 호적  | 2품 이상의 관원이나 내관·의관·역관 중 가선대부(중2품) 이상인 사람은 牙牌를 찬다. 3품 이하의 관원이나 삼의사 소속 중 의과에 급제한 사람은 모두 角牌를 찰 수 있다. ... 삼의사 소속 중 의과에 급제하지 못한 관원, ... 생도 ... 임시직·잡직·影職[명예직]인 관원은 小木方牌를 차고 ... / 호전 호적 186.  |
| 4   |   | 徭賦  | 삼의사의 正을 역임한 사람이나 당상관인 역관이나 잡과 출신은 率丁[집에서 부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그 술정을 역에 배정하지 않는다. / 호전 요부 153.  |
| 5   | 예 | 취재  | 삼의사의 관원 ... 들이 혹 대신 써주기 위하여 과거장에 함부로 들어오면 예전에 잡과에 합격한 이는 생원과 진사의 전례에 따라 중군하고, 잡과에 합격하지 못한 이는 全家徙邊한다. 삼의사 이하 중 평상시에 본업을 익혀 과거에 응시할 수 있게 된 이는 소속 관청을 통해 예조에서 공문을 받은 후에 응시를 허락한다. / 예전 과거 279.   |
| 6-9 |   | 장권  | ◎사역원·관상감·전의감·혜민서·율학·산학은 兩都目으로 취재하므로 6개월간의 근무 일수로 정하고 / 예전 권장 336. ◎6개월 안에 근무 일수를 통틀어 100일 이상이면 취재시험을 허락해야 한다. 喪 중에 있는 사람은 탈상 후 즉시 취재시험에 응시하도록 해야 한다./ 예전 장권 337. ◎각 醫司에서 봄·가을 취재시험에서 성과를 시험할 때 각 서적 가운데 『소문』을 중요한 책으로 삼는다. 모두 책을 보면서 풀이한다. / 예전 장권 341. ◎천문·의서·한학 습득관은 교육과정을 엄격하게 만들어 태만한 자는 쫓아내고, 혹은 殿最에서 정통한 자와 성과를 이룬 자는 문관으로 임명한다. / 예전 장권 345. |
| 10  |   | 혜홀  | 성균관 居齋儒生에게 질병이 생기면 성균관에서 兩醫司에게 말하여 즉시 의원을 보내 진찰하게 하고, 약값은 성균관에서 題給한다. / 예전 혜홀 354.  |
| 11  | 병 | 경관직 | 중추부의 지사·동지·첨지사의 자리는 실직에 제수하라는 전교를 받은 의관·역관들의 자리로 삼되, 임기는 30개월로 한정하고 임기를 채운 뒤에는 軍職을 준다. / 병전 광직 416.   |
| 12  | 형 | 금제  | 유생은 털옷이나 자춧빛 옷과 요대를 착용하지 못한다. 삼의사 관원도 동일하다. / 형전 금제 669.  |
| 13  |   | 잡령  | 시약청을 排設할 때는 시급한 업무에 대해서는 開坐[회의 소집]하여 아된 후 거행하더라도 刑訊은 할 수 없다. / 형전 잡령 977.   |

86) 앞의 책. p. 50, 86, 104, 135, 227, 237-238, 259, 288, 370, 386, 410.

6. 『신보수교집록』에만 수록된 의약 관련 조문 일람<sup>87)</sup>

|   | 典 | 조문   | 내용   |  |
|---|---|------|--|--|
| 1 | 이 | 경관직  | 관상감교수·이문학관은 45개월마다 자리를 옮기고, 治腫教授도 이 방식을 따른다. / 이전 경관직 19.  |  |
| 2 |   | 추증   | 의관·역관·중인·서인에게는 참관과 총관을 증직으로 줄 수 없으며 / 이전 경관직 51.   |  |
| 3 | 예 | 잡령   | 내의원 제조가 의금부의 직책을 겸할 때는 단지 죄를 의논하거나 죄인의 진술을 받는 일만 참여할 수 있고, 형벌을 집행하는 자리에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다. / 예전 잡령 584.                    |  |
| 4 |   | 用文字式 | 산실청에 내의원의 세 제조가 돌아가며 근무할 때는 정1품 아문과는 關[동등한 관청 간의 공문]으로 주고받고, 종1품 이하 아문에서는 牒[상급 관청으로 올리는 공문]으로 올린다. ... / 예전 용문 자식 597. |  |
| 5 | 형 | 홀수   | ... 도성과 지방의 담당 관리는 감옥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질병에 걸린 죄수를 치료해야 하며, 돌봐 줄 식구가 없는 죄수에게는 관청에서 옷과 음식을 지급해야 한다. ... / 형전 홀수 928.           |  |
| 6 |   | 贓盜   | 왕실의 약을 담는 데 사용하는 은그릇을 훔친 죄인을 그 외삼촌이 신고하였다. 율문의 ‘小功親이 대신 자수할 때 처벌하는 조문’을 참고하여 특별히 사형에서 등급을 낮추어 定配하라. / 형전 장도 964.       |  |
| 7 |   | 금제   | 금제   | ◎녹사·의원·산원들 및 각 군문 장교들의 부인은 각 아문이나 여러 궁가(宮家)에서 가두거나 구류할 수 없도록 영구히 규정으로 삼는다. / 형전 금제 1120. ◎약재 가운데 인삼에다 다른 약재를 붙여 완전한 인삼으로 만든 후 몰래 팔다가 적발될 경우, 인삼 상인은 은전을 만든 죄와 마찬가지로 형율을 적용한다. / 형전 금제 1219 |
| 8 |   |      |  | 赦令   |
| 9 |   |      |  |  |

87) 앞의 책. p. 52-53, 96, 276, 285, 353-354, 363, 372-374, 408.

7. 『속대전』이 『경국대전』과 다른 의약 관련 조문 일람<sup>88)</sup>

| 典     | 조문   | 내용  |
|-------|------|---|
| 1     | 이    | 경관직<br>◎환관·의관·역관에게는 輔國[정1품]의 자급을 줄 수 없다. / 이전 경관직 ◎[내의원]종7품 직장 2원을 줄였다. [전의감]종3품 副正을 줄였다. 종7품 의학교수 1원을 줄였다. ... [혜민서] 【제조 1원을 줄였다.】 종6품 의학교수 1원을 줄였다. / 이전 경관직  |
| 2     |      |   |
| 3     |      |   |
| 4     |      |   |
| 5     |      |   |
| 6     | 호    | 징채<br>중국에 간 의원이나 역관 등이 구입한 중국 물품을 바칠 때 수량을 채우지 않은 자는 주상께 아뢰어 죄를 다스리고 물품을 추징한다. / 호전 징채 * 『대전속록』 내용의 명문화   |
| 7     | 예    | 제과<br>대과와 소과의 초시·알성시·춘당대시·泮製 [성균관 유생의 초시]를 시행하는 날에는 삼의사의 녹관, 생도, 각 관청 서리의 명단을 비변사에 모아서 點考 [이름에 점을 찍으며 확인함] 한다. 【과거장에 합부로 들어와 대신 써주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예전 제과 * 『신보수교집록』 내용의 명문화  |
| 8     |      | 생도<br>[전의감] 의학생도 6명을 추가한다. [혜민서] 의학생도 32명을 추가한다. / 예전 생도  |
| 9     |      | 事大<br>중국에 파견되는 사신의 일행. 동지사행. ... 양의사 의원 1원과 관상감 관원 1원을 모두 임명하여 보낸다. / 예전 사대 * 『通文館志』 내용의 명문화  |
| 10    |      | 취재<br>각 學의 취재 때 예조 당상관이 사정이 있으면 해당 아문의 제조가 예조의 낭관과 함께 시험한다. ... 【[의학] 『찬도맥』·『동인경』(책을 등지고 외운다), 『직지방』·『본초』(이상은 『경국대전』에 나온다)·『소문』·『동원십서』·『의학정전』(새롭게 추가했다. 이상은 책을 보고 풀이한다). 나머지 책은 모두 폐지했다. 침구의(針灸醫)는 의학 취재에 함께 들어가며, 각종 책은 지금 폐지했다(『소문』을 등지고 외우면 별도로 2배 점수를 주고 같은 점수라면 우선권을 준다)】 / 예전 취재 * 『소문』 책 관련은 『각사수교』 내용 명문화   |
| 11-14 | 예    | 권장<br>◎양의사의 참하관인 前衛과 생도 중에서 연소총민을 선발하여 1·4·7·10월에 관원에 임명한 후 본업의 책을 【취재시험 때와 같으나 『동인경』과 『찬도』 중에서 하되, 다른 책으로 대신 고강하기를 원하는 자는 들어준다. 『소문』을 보지 않고 풀이한 자에게는 점수를 배로 주며, 동점이 있을 때 우선권을 준다】 고강하여 권면하거나 징계한다. ... / 예전 권장 * 『소문』 책 관련은 『각사수교』 내용 명문화 ◎내의원 여의 12인은 매월 2와 6이 들어가는 날, 【2·12·22일과 6·16·26일】 내의원에 입직하는 관원에게 본업의 책으로 【『동인경』이나 『찬도』】 고강 받은 후 1개월을 합하여 점수가 6분(分) 이상이면 料를 지급받는다. / 예전 권장 ◎혜민서 여의 【70인】 중에서 젊고 똑똑한 사람을 선발하여 의서를 【『동인경』과 『찬도』】 가르치고 ... / 예전 권장 ◎해마다 도목정사 때 사자관이나 양의사·관상감·도화서·사역원에서 오래 근무한 관원은 이조에 공문을 보내어 遷轉한다. / 예전 권장 |
| 15    |      | 혜훈<br>성균관 居齋儒生에게 질병이 생기면 성균관에서 양의사에게 말하여 즉시 의원을 보내 진찰하게 하고 ... / 예전 혜훈 * 『수교집록』 내용의 명문화   |
| 16    |      | 선상<br>여의를 뽑아 도성으로 보내는 법은 매 3년을 기한으로 삼지 말고, 원래 정원에서 결원이 생길 때마다 각 고을에서 선발한다. / 예전 선상  |
| 17    |      | 잡령<br>혜민서의 향약재는 上司라 하더라도 상세히 정해진 수량 외에는 합부로 쓸 수 없다. / 예전 잡령   |
| 18    | 용문자식 | 산실청에 내의원의 세 제조가 돌아가며 근무할 때는 정1품 아문과는 關으로 주고받고 ... / 예전 용문자식 * 『신보수교집록』 내용 명문화   |
| 19    | 병    | 경관직<br>[중추부] ... 【○지사·동지·첨지사의 자리는 실직에 제수하라는 전교를 받은 의관·역관들의 자리로 삼되, 임기는 30개월로 한정한다.】 / 병전 경관직  |
| 20    |      | 경관직<br>[五衛] ... 종4품 부호군. 12원을 더하였다. ... 종5품 부사직. 23원을 줄였다. ... 부사과. 1원을 더하였다. 【지금은 177원이다. ○원록체가 35원 ... 내의원 의원 1원 ... 전의감 습독관 1원, 관상감 습독관 1원, 혜민서 연소총민 1원, 치중의원 1원 ...】 / 병전 경관직   |
| 21    | 형    | 장도<br>수라간의 물건을 훔친 자는 국가의 제례에 사용하는 물품이나 신령이 사용하는 물품을 훔친 것과 같은 형을 적용한다. 【내의원의 은그릇을 훔친 자도 같은 형을 적용한다.】 형전 장도 * 『신보수교집록』 내용 명문화   |

88) 위의 책, p. 57-58, 79, 88, 96-97, 182, 198, 229-230, 247-248, 264, 275, 285, 364.

8. 『대전통편』이 『속대전』과 다른 의약법령 관련 조문 일람<sup>89)</sup>

|   | 典 | 조문   | 내용   |
|---|---|------|--|
| 1 | 이 | 외관직  | [경기] ... 심약 종9품. [경국대전] 1원. [대전통편] 감한다 ... [황해도] ... 심약 2원 종9품. [경국대전] 1원. [대전통편] 1원을 추가하여 절도사도에 둔다 ... / 이전 외관직 |
| 2 |   | 한품서용 |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부터 사역원 이하의 각 관청에 서용하는 규정은 모두 폐지되고 오직 관상감에만 아직 사족의 첩자손이 있다.】 / 이전 한품서용                  |
| 3 | 예 | 제과   | 대과와 소과의 초시·알성시·춘당대시·반제를 시행하는 날에는 삼의사의 녹관, 생도, 각 관청 서리의 명단을 비변사에 모아서 점고한다. 【 ... 사헌부에서도 점고한다.】 / 예전 제과            |
| 4 | 병 | 구휼   | 三軍門[훈련도감·어영청·금위영]에 약방을 설치하여 【침의·약방 각 1명】 병든 군졸을 치료한다. / 병전 구휼  |
| 5 | 형 | 장도   | 【수라간의 물건을 훔친 경우라도 죄의 경중이 있으니 사건이 발생했을 때 주상께 아뢰어 처분한다.】 / 병전 장도   |

9. 18세기 후반 이후 수교집의 의약 관련 조문 일람<sup>90)</sup>

|      | 典 | 조문 | 내용  |
|------|---|----|---|
| 특교정식 |   |    |   |
| 1    | 이 | 잡령 | ... “이조에서는 심약의 일을 진술했으나 검을 또한 임의로 파면하여 내보내는 폐단이 있으니 한결 같은 규정으로 하지 못하게 함이 마땅합니다.” ... “엄중히 금하여 함부로 파직시키지 못하게 하라.” / 本曹稟定       |
| 2    | 형 | 추단 | “... 이후로 의관·역관·율관 등 각 과의 본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소속 아문이나 상부 관청에 상관없이 懸罰을 시행하지 말도록 규정으로 정하여 분부함이 어떻습니까?” ... “그대로 시행 하라.” / 備局稟定   |
| 3    |   | 금제 | “... 약국을 여는 경우가 많아 마음에 늘 잘못이라 여겼거늘 심지어 관청 근처에서까지 현판을 걸고 약국을 열고 있다. ... 즉시 명하여 없애고 해당 관청의 관원과 담당 내시를 중죄 쪽으로 推考하라. ...” / 금약국현판 |
| 4    | 형 | 공천 | “... 관노비와 의녀·침선비의 요역 면제와 면제받으려고 하는 행동에 대하여 각 도에 공문을 보내 단속함으로써 예전과 같은 폐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습니다. ...” / 본조품정                    |
| 수교정례 |   |    |   |
| 5    | 이 | 잡령 | “... 심약은 매우 낮은 직임이긴 하지만 주상의 재가를 받은 관원입니다. ... 엄중히 금하여 함부로 파직시키지 못하게 하라. ...” / 검율부득태법 * 『특교정식』 내용                             |

10. 『대전회통』이 『대전통편』과 다른 의약 관련 조문 일람<sup>91)</sup>

|   | 典 | 조문  | 내용   |
|---|---|-----|--|
| 1 | 예 | 제과  | ○【비변사는 지금은 의정부에 속한다. ○점고는 지금 없어졌다.】 / 예전 제과 ○【... 『의학입문』 새로 추가되었다. ...】 / 예전 제과                        |
| 2 |   |     |  |
| 3 | 병 | 경관직 | ○[중추부]【... ○관상감·의관·역관 모두 擬望으로 거행한다. ... 부사직 102원 종5품. 2원을 더하였다. ○原祿遞兒 17원 ... 내의원 의원 6원, ...】 / 병전 경관직 |

89) 앞의 책. p. 75-76, 91, 185, 314, 366.

90) 위의 책. p. 99-100, 340-341, 380, 389-390.

91) 위의 책. p. 186, 293.